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2019. 12

정재호 · 김한성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2019. 12

정재호 · 김한성

서 언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액물품의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손쉽게 여러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쇼핑몰 및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과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개인이 원하는 물품을 국경과 상관없이 직접 주문하고 구매하는 무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형 무역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액 개인무역은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액 개인무역을 기존의 통관제도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리고 소액 개인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도 빠르게 증가하여 과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일반수입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되고 내국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소액 개인무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와 통관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방안을 논의하고 각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기업형 수입에 적합한 수입신고서를 대신해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통관제도의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여 향후 소액 개인무역이 적절한 제도 틀 안에서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

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 인천대학교 이명현 교수, 기획재정부 성용욱 서기관, 그리고 익명의 심사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석자들, 본 연구원의 김학효 연구원과 원고교정을 맡은 연구출판팀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해외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손쉽게 여러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마존(amazon.com) 등과 같은 국제적인 쇼핑몰 및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으로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0년에는 약 360여만 건으로 일반수입에 비해 약 1/3수준이었지만, 그 후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에 1천만 건을 넘어섰고, 2015년을 기점으로 일반수입신고 건수를 앞질렀다. 2018년 전체 수입 5,382만 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3,226만 건으로 전체 수입 건수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 정도로 미미하다. 일반수입은 기업이 대규모로 수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만, 전자상거래는 개인이 소액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들로 국제우편물에 의한 반입은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수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개인들의 소액물품 통관이 증가하면서 관세행정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입통관제도는 대규모 기업형 무역구조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런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수입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주요국의 통관 및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소액 개인무역에 특화된 통관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의 통관 및 과세제도 중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띄었다. 미국은 소액물품의 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2016년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과세 및 통관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에서는 새롭게 소액물품 단일 거래 한도(5천위안)와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 6천위안)를 설정했다.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지만 증치세(부가가치세)는 70% 감액된 9.1%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단일 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부과하며 개인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설정해서 과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 면제 혜택을 통제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2021년부터 관세 면제한도인 150유로는 유지하지만,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한도를 철폐해서 소액물품이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도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변화이다. 뉴질랜드에서도 2019년 말부터 일정 규모(연간 6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는 역외사업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등록을 의무화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15%의 GST를 과세하여, 내국물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¹⁾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방식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법이 있고, 수입신고 방법에는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1) 관세는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만 과세할 경우,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자상거래 거래별로 과세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려고 해도 개별 거래별로 과세 자료가 필요해서 관세를 함께 부과할 때와 비교하면 과세행정 비용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면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나머지 수입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소액 개인무역에서 간이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1% 미만이고 목록통관을 통해 반입되는 건수가 전체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다. 나머지는 약 40% 정도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가별 반입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건수가 가장 많다. 그렇지만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2013년)에서 약 51%(2018년)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이 증가해서 전체의 약 26%(2018년)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10여년간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다. 의류, 화장품, 기타 식품 등의 건수가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자제품은 가성비 높은 중국산 전자제품이 빠르게 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건당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2018년에 전자제품은 약 88달러/건이지만 의류는 약 96달러/건이었다. 전자제품보다 더 고가의 품목인 의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부분의 소액 개인무역 물품은 면세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을 보면, 과세통관 건수는 전체 전자상거래 건수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95% 정도는 면세되고 있다.

이처럼 소액 개인무역 물품의 대부분이 면세로 반입되는 이유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에 따른 것으로 소액 개인무역의 과세에 대한 행정비용이 과세수입보다 낮음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하한선 적용이 국내 정식 수입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폐 하자는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OECD(2015)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을 전통적 과세방안과 구매자 혹은 판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그리고 중개당사자를 통한 과세안을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과세방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전통적 과세방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통관 시점에 과세가 진행됨에 따라 통관 지연과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구매자 과세방안은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중립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매 수입 건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해야 해서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구매자 과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구매자에게 과세를 실시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도 외국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해외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개당사자 과세방안 중에, 운송업체에 대한 과세방안은 운송업체가 과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수입국의 통관 및 관세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된다. 하지만 특송운송업체가 아닌 종이 서류에 기초한 우편서비스로 거래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에 대한 과세는 통관 과정에서 관세당국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과세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 형태와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방식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개당사자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매자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송업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에도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면세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폐할 경우에도 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현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분쟁에서 대한 특

송업체와 구매자 간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전통적 과세방식은 구매자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 개인무역의 수입에서 전통적 과세방안은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해 과세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 수입에서는 구매자가 과세정보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 구매자 과세방안이 효율적이다. 특히 전자정보에 기반한 특송운송으로 반입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은 현행 증개당사자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되,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구매자 과세방안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구매자 과세방안의 실행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신고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구매자(납세자)의 고의적인 과소보고에 대한 국내 규정 구축과 같은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매자 과세방안은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과세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구매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고 과소보고의 가능성과 관세 및 통관제도에 전문 지식을 지니지 못한 일반 구매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행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우편서비스에 대한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우편서비스의 전자데이터교환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세방안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형 무역구조에 적합하게 수입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소액 개인무역을 기존의 일반무역제도 안에서 수용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수입계약의 체결 후 신용장 발급, 운송 및 보험 계약,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소액 개인무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과 동시에 대부분 신용카드로 완납이 이루어져 소비자로 배송되는 단순한 구조로 일반무역의 신용장 발급 등은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 물품의 약 40% 정도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특히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되고 있어, 특송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전자상거래와 관련 없는 항목이 다수 포함된 일반수입신고서를 기재하고 있다.²⁾ 이 밖에 신고납부와 부과지의 충돌, 5년간의 서류보관의무 등의 불합리한 제도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약 60% 정도가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목록통관제도는 원래 소액 개인무역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고 기업들의 서류 또는 샘플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약 77%가 전자상거래 물품이고 원래 목적인 기업들의 서류 등의 운송은 약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관제도를 바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과세방안도 적용 가능해질 수 있다.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신설할 때 첫째,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활용할 경우 소액 개인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파악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을 빈번하게 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활용하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소액 개인 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이렇게 빈번하게 소액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단일 거래 한도와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하여 관세 및 증치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를 받고 있는 개인들에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2) 목록통관은 28개 항목을 기재하는 반면, 일반수입신고는 69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같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소액 개인무역 신고서에는 정확한 통관과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반수입신고처럼 개별 상품별로 나열하고 HS코드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체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과세되지 않아 과세당국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소비자가 전문 용어인 HS코드를 알 필요가 없으며 향후 제도가 도입되어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별로 HS코드를 부여해서 운송장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판매자와 운송자의 전자정보를 활용해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위험관리 및 과세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전 과정이 전자적 정보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전산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경우, 전자정보로 확인된 수입신고는 개장 검사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과세 금액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그 대신 전자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수입신고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부정 불법무역 단속에 과세당국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주소 등의 주문자 정보, 가격 등의 판매물품 정보)와 운송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운송 관련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세당국에서 전산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신고서를 마련할 때 신고자 편의 및 세관의 신고유류 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신고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자정보를 세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개별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처리 행정비용은 기존 일반무역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가진 물품 및 주문 정보와 운송자의 배송 정보 등이 전산으로 취합되고 자동으로 수출신고서가 작성되도록 구축되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과제로는 첫째, 국제적인 전자정보 표준화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가 이해당사자와 세관당국 간에 원활하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구매한 내역이 전 세계 세관당국에 제공된다고 할 때, 개별 국가별로 데이터 방식이 다르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국제표준으로 제공된다면 그만큼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상호검증체계가 구축되어 납세협력 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화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거래증개자들의 전자정보를 세관에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EU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 적용 대상, 개인정보의 기본 처리 원칙 등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어,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전산 자료 교환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제무역의 새로운 형태로 소액 개인무역이 등장하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새로운 통관제도 신설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기반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공정한 과세도 가능해질 수 있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로 소비자 효용은 감소하지만 과세제도 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감소하고 과세 형평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과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은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전자정보를 활용한다면 특히, 국제우편의 전자시스템과 국제 전산 정보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과세행정 비용은 기존 무역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점을 잘 이용하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공정한 소액 개인무역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19
II. 국내 소액 개인무역 현황	25
1. 국내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제도	25
가. 통관제도 변천	25
나. 소액 개인무역 관련 법규정	27
다. 소액 개인무역의 신고방법별 통관제도	29
라. 소액 개인무역의 운송방법별 통관 절차	32
2.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	40
가.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규모	40
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면세 통관	43
다.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현황	45
라.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현황	48
마. 전자상거래 국가별 반입 현황	51
바. 통상우편을 통한 전자상거래	54
3. 소액 개인무역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55
4. 소액 개인무역 관련 부정 불법 교역	58
가. 마약류의 국내 반입	59
나. 소액물품으로 위장한 탈세	60
다. 자가소비용 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탈세	62
III. 소액 개인무역 관련 국제적 논의 및 주요국 통관 및 과세제도 ..	63
1. 국제기구의 소액물품 통관 관련 논의	63
가. 세계관세기구(WCO) 논의	63
나.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64

2. 주요국의 소액 개인무역 관련 통관제도	66
가. 미국	66
나. 중국	71
다. 일본	74
라. EU	78
3. 소결	81
IV.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분석 및 제안	83
1.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 형태	83
가. 소액 개인무역 절차	83
나. 소액 개인무역의 주요 이해당사자	85
2.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89
가. 전통적 과세안	89
나. 구매자에 대한 과세안	91
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	92
라.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안	93
마. 소액 개인무역 과세방안 평가	94
3. 우리나라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제안	100
가. 현행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면세 적용	100
나. 현행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	101
다. 국내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제안	104
V.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통관제도 제안	113
1. 기존 수입신고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	113
가. 전통적 무역과 전자상거래 차이	113
나. 소액 면세물품의 일반신고	114
2. 소액 개인무역제도 제안	116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116

나. 개별 물품 및 상품 코드 기재	117
다. 전자상거래 판매자와 운송자의 정보 활용	118
라. 향후 추진 과제	122
VI. 요약 및 결론	126
참고문헌	135

표목차

〈표 II-1〉 「관세법」 제254조 및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27
〈표 II-2〉 「관세법」 제254조의 2(택송품의 특별통관)	28
〈표 II-3〉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및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28
〈표 II-4〉 목록통관 배제대상 주요 물품	30
〈표 II-5〉 간이신고 배제대상 주요 물품	31
〈표 II-6〉 일반수입신고 주요 신고 사항	32
〈표 II-7〉 특송물품 통관 목록	38
〈표 II-8〉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 물품 비중(건수)	39
〈표 II-9〉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 물품 비중(금액)	39
〈표 II-10〉 일반수입과 전자상거래 반입 비교	40
〈표 II-11〉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현황	42
〈표 II-12〉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현황(건수)	44
〈표 II-13〉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현황(금액)	45
〈표 II-14〉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46
〈표 II-15〉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47
〈표 II-16〉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건수 비중	50
〈표 II-17〉 우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55
〈표 II-18〉 해외직구 이용 이유(복수응답)	56
〈표 II-19〉 해외직구 이용 경험	57
〈표 II-20〉 해외직구 이용 횟수	57
〈표 II-21〉 해외직구 1회당 지출비용 금액별 비중	58
〈표 II-22〉 해외직구 이용 시 주요 결제수단	58
〈표 II-23〉 마약류 반입경로별 단속실적	60
〈표 III-1〉 제7조 제8항 특송화물(Expedited Shipments)	65
〈표 III-2〉 Category 1 및 Category 2 물품 통관 양식의 주요 내용	73
〈표 III-3〉 우편물 통관 절차	75

〈표 Ⅲ-4〉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신고사항	76
〈표 Ⅲ-5〉 영국의 우편물 간이신고서 주요 항목	79
〈표 Ⅳ-1〉 공급체인 이해당사자별 최소 정보	88
〈표 Ⅳ-2〉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전통적 과세안의 장단점	96
〈표 Ⅳ-3〉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구매자 과세안의 장단점	97
〈표 Ⅳ-4〉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판매자 과세안의 장단점	98
〈표 Ⅳ-5〉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중개당사자 과세안의 장단점	99
〈표 Ⅳ-6〉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안 평가	100
〈표 Ⅴ-1〉 전통무역과 전자상거래 거래방식 비교	114
〈표 Ⅴ-2〉 전자상거래 판매 관련 주문 정보(판매자)	119
〈표 Ⅴ-3〉 운송 관련 정보(운송인)	120
〈표 Ⅴ-4〉 과세당국의 통합 가능한 정보	121
〈표 Ⅴ-5〉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주요 조항	124

그림목차

[그림 II-1]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방법	30
[그림 II-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5
[그림 II-3] 특송물품 수입통관	36
[그림 II-4]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41
[그림 II-5]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액	42
[그림 II-6]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비중(건수)	43
[그림 II-7]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비중(금액)	44
[그림 II-8]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비중)	46
[그림 II-9]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비중)	47
[그림 II-10] 전자상거래 주요 4개 품목 반입 건수 추이	49
[그림 II-11] 전자상거래 주요 4개 품목 반입 금액 추이	50
[그림 II-12]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52
[그림 II-13]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비중	52
[그림 II-14]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금액	53
[그림 II-15]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금액 비중	53
[그림 III-1] 통관 요약 양식(CBP Form 7501)	69
[그림 III-2] 통관/배송 양식(CBP Form 3461)	70
[그림 III-3] 수입(납세) 신고서 - 매니페스트 통관용	77
[그림 IV-1] 해외직구와 일반무역 절차 비교	84
[그림 IV-2] 전통적 과세방안	90
[그림 IV-3] 구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91
[그림 IV-4] 판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92
[그림 IV-5]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방안	93
[그림 IV-6] 소액 개인무역의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방식	103
[그림 IV-7] Electronic Advance Data 시스템 흐름도	111
[그림 IV-8] 캐나다 국제우편 발송 웹사이트	111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손쉽게 주문하고 결제하는 일련의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물품 통관이 급증하면서 근래 들어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무역 구조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소규모 소매 개인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¹⁾ 디지털 기술진보에 따라 이러한 해외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소매 개인무역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amazon.com), 이베이(Ebay)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쇼핑몰 및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과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개인이 원하는 물품을 국경과 상관없이 직접 주문하고 구매하는 무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cKinsey & Company(2016)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에 약 1조 9,0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3조 4,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는 거래가 2015년에 약 3,0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1조달러로 증가해서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빠르게 증가하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4억명에서 9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성장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1) 무역은 국가 간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해 개인 소비자들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국경을 넘어 배송되는 무역을,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무역에 대비해서, 소매 개인무역으로 명명하고 있다.

2) McKinsey & Company,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 p. 35.

라 국경을 넘어 오는 수입 건수가 2018년에 3,226만건이고 수입액은 27억 5,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0년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된 건수가 358만건이고 그 금액도 2억 7,0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증가하였다(본고 p. 39 〈표 II-10〉 참조).

이처럼 소액 개인무역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액물품과 정식수입물품, 내국물품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소액물품(150달러, 미국 출발 200달러)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동일한 금액의 일반 수입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되고 있어 일반수입물품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금액의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소액물품은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어 내국물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과세제도에서 소비자들이 내국물품보다 해외물품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상 차이로 인해 내국물품과 해외물품에 대한 선호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세제도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자가사용에 한해 소액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가사용 소액 면세 기준은 1회 기준으로, 만약 해외직구를 반복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액이 현재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향후에도 그 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과세제도의 차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세상 차별을 악용해서 대량의 물품을 개인들의 소액 면세한도 이내로 나눠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정 사례도 있지만, 친인척 등의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나눠서 수입하거나 하나의 수입계약을 여러 일자에 걸쳐 나눠서 반입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개인의 자가소비용 소액물품으로 반입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을 반품, 환불 등의 어려움과 과도한 반송비용으로 인해 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무신고 밀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자가소비용이라는 용도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는데,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으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면제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자가소비용 소액물품과 일반수입에 대한 과세 정책 차이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소액 개인무역이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수입통관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관제도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업형 교역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관제도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전통적인 수입신고 방식은 수입자가 대량으로 주문하고, 수입 대금은 통상 물품인도 시점 또는 판매 시점에 이루어져서 신용장에 의한 은행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은 소비자가 소량 주문하고 수입 대금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미리 선납으로 결제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형 대규모 수입방식에 적당한 수입통관제도를 새로운 소액 개인무역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의 수입방식과 소액의 개인무역을 구분해서 현재 전통적인 수입통관제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소액 개인무역에 특화된 통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액 개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물품의 절반 이상이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반입되고 있지만, 목록통관제도는 원래 소액 개인무역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고 기업들의 서류 또는 샘플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해 특송제도에 맞춰서 설계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특송을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래 목적인 기업들의 서류 등의 운송은 1/4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전자상거래 물품은 기존의 일반수입신고 방식대로 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입장에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는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큰 차

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판매자, 배송대행 또는 운송 업체 등의 중개당사자들은 28개 목록통관 신고항목을 69개 일반수입신고 항목에 억지로 맞춰서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제도로 인해 국내 구매자는 해당 수입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등 향후 기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모순적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이 급증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액 개인무역이 증가하면서 이에 적합한 과세 및 통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새로운 통관제도를 정립해서 소액 개인무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관리하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과세 및 통관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기존 제도와 차별적으로 새로운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형태의 과세제도 및 통관제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의 교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로는 최장우(2006), 광병곤·송희영(2009), 정재호 외(201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해외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해외 전자상거래가 요즘처럼 급증한 시기에 연구된 논문으로는 김충호(2017), 김종덕·김율성(2019) 등이 있다.

최장우(2006)에서는 2005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통관관리제도 및 특별통관제도를 설명하고, 특별통관제도 도입 효과 및 향후 특별통관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건수 및 금액 등의 통계관리,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운송방범(우편과 특송)에 따른 차등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대안 대부분이 시행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현재는 대부분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곽병곤·송희영(2009)에서는 관세청에서 시행한 지 5년 된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평가하였다. 당시에는 전자상거래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불법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불법 통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관 목록 별도서식 제정, 특별통관대상업체 재정립 및 지정신청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재호 외(2012)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조사하여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국 전자상거래 통관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소액 면세제도, 신고특례제도, 물품 위험관리제도, 그리고 분할선적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편물 소액 면세 기준(15만원)과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기준(미화 100달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기준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현재는 목록통관 기준이 150달러로 상향되었다.

김중호(2017)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특송물품 통관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자 명의도용, 특송업체의 낮은 범규준수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개선, 통관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추가, 특송품의 국내배송지 상이내역 제출대상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중덕·김윤흥(2019)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을 통해 반입되는데, 이 중에서 밀수 및 관세탈루 방지, 미화 150달러 이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적용하는데,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일반신고제도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납세신고 방법 개선, 신고항목 축소,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소액 개인무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 소액 개인무역과 관련한 국내 통관 절차 및 방식 등의 통관제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규모 및 품목별,

국가별 반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 등을 논의하고, 소액 개인무역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소액 개인무역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등 소액 개인무역과 관련된 과세제도 및 통관제도 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한다.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해서 과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기존 수입신고제도와 소액 개인무역 통관제도를 비교하고 통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국내 소액 개인무역 현황

이번 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소액 개인무역 통관제도의 변천과 국내 통관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규모 및 품목별, 국가별 반입 현황 등 해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소액 개인무역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국내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제도

가. 통관제도 변천

전자상거래 발달로 소액 개인무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관세법」에서는 대규모 기업형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액 개인통관에 대해서는 「관세법」 254조³⁾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는 관세청 고시인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사이버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B2C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세탈루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오프라인 거래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거래, 직접 구매한 물품을 결제하거나 국제배송 하는 등의 특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거래 등 해당 고시에 규정된 전자상거래업을

3)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19. 6. 20.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특별통관대상 업체 지정 신청을 하고,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⁴⁾

한편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유지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는 2014년 6월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 사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사유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수의 특별통관대상업체만 이용할 수 있던 목록통관 등을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일환으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⁵⁾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은 2015년 말부터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소액 개인무역이 급증하면서 통관행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6년 7월에는 인천에 특송물류센터가 개장하였다.⁶⁾ 특송물류센터 개장으로 기존 인천 및 김포 세관지정장치장과 자체시설에서 처리하던 통관물품을 특송물류센터에서 집중 관리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반출과 함께 모든 특송화물의 X-ray 검사를 통해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시켰다. 한편 중국에서 반입되는 전자제품 등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2018년 11월 인천항에 해상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특송통관장을 마련하였고,⁷⁾ 2019년 9월에는 평택항에도 해상특송통관장을 신규 개장하였다.⁸⁾

4) 최장우, 2006, p. 92.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3490>, 검색일자: 2019. 7. 5.

6) 관세청 보도자료, 「특송물류센터 개통 1주년... 화물흐름은 더 빠르게, 국민건강은 더 안전하게」, 2017. 6. 8.

7)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신속 통관 위해 인력충원 추진」, 2018. 11. 6.

8)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제 구축」, 2019. 9. 20.

나. 소액 개인무역 관련 법규정

국내 수입통관에 관한 기본법은 「관세법」 제226조~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에서 소액 개인무역과 관련성이 높은 조항은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관세법」 제254조), 탁송품의 특별통관(「관세법」 제254조의 2) 및 우편물 통관에 관한 내용(「관세법」 제256조~제261조)을 꼽을 수 있다.

「관세법」 제254조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신고 방식, 과세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는 관세청 고시인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표 II-1〉 「관세법」 제254조 및 「시행령」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19. 6. 20.

「관세법」 제254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자는 간략한 통관 목록만을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의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표 II-2〉 「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

<p>「관세법」 제254조의 2(탁송품의 특별통관)</p> <p>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 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종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 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19. 6. 20.

우편물에 대한 통관 절차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편물에 대한 관세를 징수해야 할 경우,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관세 징수 이전에는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표 II-3〉 「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및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p>「관세법」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p>「관세법」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19. 6. 20.

소액 개인무역은 상품의 이동을 특송업체나 우편서비스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특송업체나 우편서비스를 이용한 통관 절차는 「관세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해당 고시를 통해 운영된다.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관 절차는 각각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기술되어 있다.

다. 소액 개인무역의 신고방식별 통관제도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통관 방식에는 크게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신고 방식에는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눌 수 있다.

1) 목록통관⁹⁾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출발한 물품은 한미FTA 제7.7조에 의해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가격에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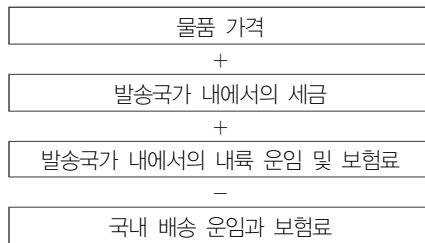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이면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이다. 이때 물품 가격에는 해당 물품의 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한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며, 국내로 배송할 때의 운임과 보험료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과 해외발생비용, 그리고 해외운송비용과 보험료의 합계 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면세되는 금액은 같지만 적용 대상 금액이 다르다. 다시 말해 운송방법에 따라 과면세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물품 가격이 면세범

9)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1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위인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과세 가격에 국내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된다.

또한 발송국가와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합산하여 면세한도 범위 초과 시 물품 전체 가격에 과세한다. 즉,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해 분할 혹은 반복해서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산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1]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방법



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내 배송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
 자료: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18, p. 6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 작성

<표 II-4> 목록통관 배제대상 주요 물품

배제대상	예시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등
한약재	인삼, 홍삼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짜퐁 가방·신발·의류·악세서리 등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혼합 조미료, 담배, 주류 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유해 화장품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자료: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18, p. 3

2) 간이수입신고¹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간이한 방법이란, 기타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만 물품 가격 기준 충족에도 불구하고,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표 II-5〉 간이신고 배제대상 주요 물품

배제대상	비고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	법을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 또는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등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의세율 적용신청 물품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이 신청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 물품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시물품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	-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검색일자: 2019. 6. 1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검색일자: 2019. 6. 1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일반수입신고¹¹⁾

전자상거래 물품 중에서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및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수입신고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표 II-6〉 일반수입신고 주요 신고 사항

주요 신고 사항	비고
포장의 종류·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와 해외공급자번호 또는 해외구매자번호	-
그 외 기타 사항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efYd=20190501#J241:0>
 검색일자: 2019. 6. 14.

라. 소액 개인무역의 운송방법별 통관 절차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 개인 물품이 국내로 운송되는 방법은 크게 국제우편을 통하거나 또는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다.

1) 우편물 수입통관

우리나라는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회원국으로서 국제우편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 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검색일자: 2019. 6. 1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물협약에 의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우편물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국제통상우편, 국제소포우편, 국제특급우편(EMS) 등이다. 국제통상우편에는 서장(편지)을 비롯해서 우편엽서, 인쇄물, 소형포장물이 포함되어 있다. 소형포장물은 2kg 미만으로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물품을 의미한다.

서장(편지)을 제외한 국제우편물(통상, 특급, 소포우편물 등)은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물품은 개봉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세관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¹²⁾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우체국은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현장면세와 현장과세 그리고 심사품목으로 분류한 후 통관우체국에 통보한다. 현장면세 품목은 「관세법」 제94조 소액품목의 면세에 해당하거나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등이 해당되며¹³⁾ 현장과세품목은 물품 현장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중, 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명확하고 미화 1,000달러 이하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¹⁴⁾ 현장과세 우편물품에 대해

12) 우리나라 통관우체국은 2군데로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와 부산국제우체국(부산 국제우편비즈니스센터)가 있다.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78&layoutMenuNo=65, 검색일자: 2019. 6. 25.

1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면세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4.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5.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1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대하여는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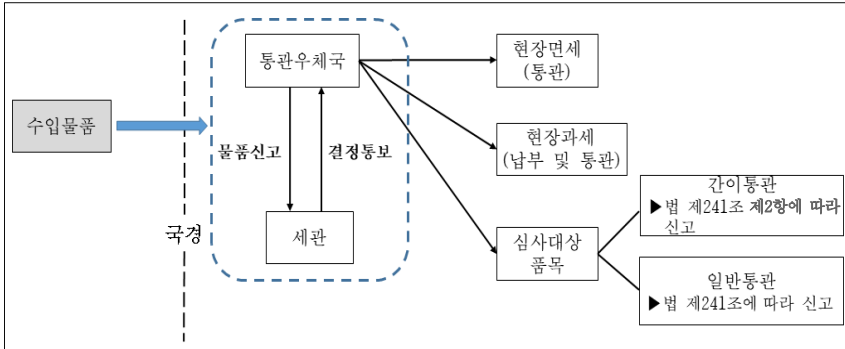
1. 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3.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서는 간이세율¹⁵⁾이 적용되며, 세관은 통관우체국에 통지하고 통관우체국은 수취인으로부터 세액을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한다.

현장면세나 현장과세 물품이 아닌 우편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며, 심사대상품목의 수취인은 우편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심사대상품목은 수입신고 방식에 따라 간이통관대상 우편물과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로 나누어진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며,¹⁶⁾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거나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 혹은 수취인이 일반 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대상품목은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¹⁷⁾

-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통지되도록 한다.
 - ⑤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다.
 - ⑥ 통관우체국장은 제5항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5)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20%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보석, 시계, 의류 등은 20% 이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 16)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 ① 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은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전자우편,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통관시스템에 감면조항 등의 근거를 입력한다.
 - ④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구매영수증 등의 구매처(국가)와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 ① 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물품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이하 "일반수입신고"

[그림 II-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자료: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기초로 저자 작성

2) 특송물품 수입통관

특급송탁물품(특송물품)은 세관에 특급탁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특송물품은 대개 상업서류, 견본품 등으로 신속하게 배송될 필요가 있는 물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통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법」 제254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는 물품 가격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을 따르게 된다. 먼저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의 물품 가격이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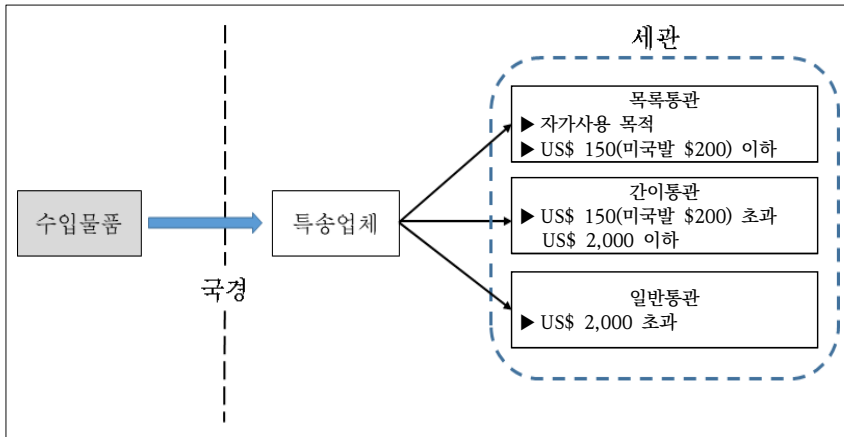
1.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2.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과세가액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③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따른 일반통관 절차를 적용한다.

④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일반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겹포장에 별표1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대상이 된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신고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일반수입신고절차를 따른다.¹⁸⁾

[그림 II-3] 특송물품 수입통관



자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기초로 저자 작성

1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목록통관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간이신고 대상 수입물품의 신고는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하며 일반수입신고 시 요구되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과 같은 서류 첨부는 예외이다.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물품에서 목록통관대상품목은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에 해당한다.¹⁹⁾ 따라서 목록통관 신고품목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을 위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세관의 검사와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 수입한 후 상업적 판매를 하는 불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1.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 II-7〉 특송물품 통관 목록

① 특송업체명	② 선박편명(항공편명)	③ 적출국(항) (Port of loading)	④ 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⑤ 입항일자 (Date of Arrival)	⑥ 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⑦ 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⑧ 송하인 주소 (Address)
⑨ 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⑩ 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⑪ 수하인 주소 (Address)	⑫ 품명 (Description)
⑬ 규격 (Standards)	⑭ 포장개수 (carton)	⑮ 수량 (piece)	⑯ 중량 (kgs)
⑰ 물품 가격 (US\$)	⑱ 발송국 (Origin)	⑲ 용도구분 1: 개인 2: 회사	⑳ 거래코드 A: 전자상거래 D: 개인일반 E: 상용견품 F: 상업서류
㉑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㉒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㉓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㉔ 세관기재란
㉕ 우편번호 (Zip Code)	㉖ HS 2단위 (HS Code)	㉗ 수하인 식별부호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생년월일 다: 통관고유부호 라: 사업자번호	㉘ 송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자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별지 제4호서식]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특송물품 중 일반거래물품의 건수는 2010년에는 약 62.2%를 차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약 23.4%로 감소한 반면, 특송물품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의 건수가 전체의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특송물품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송물품 중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 금액은 2018년에 전체 특송물품 금액의 약 14.1%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작다.

〈표 II-8〉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 물품 비중(건수)

(단위: 천건, %)

연도	일반거래물품		해외직구물품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0	5,458	62.2	3,319	37.8	8,777
2011	5,910	51.4	5,598	48.6	11,508
2012	6,200	43.8	7,941	56.2	14,141
2013	6,566	37.1	11,155	62.9	17,721
2014	7,058	31.2	15,531	68.8	22,589
2015	7,659	32.6	15,842	67.4	23,501
2016	9,552	35.5	17,377	64.5	26,929
2017	9,749	29.2	23,592	70.8	33,341
2018	9,852	23.4	32,255	76.6	42,107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25.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표 II-9〉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 물품 비중(금액)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일반거래물품		해외직구물품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6,534	96.2	255	3.8	6,789
2011	11,037	95.9	469	4.1	11,506
2012	13,503	95.0	704	5.0	14,207
2013	14,097	93.2	1,036	6.8	15,133
2014	14,351	90.3	1,545	9.7	15,896
2015	14,285	90.4	1,521	9.6	15,806
2016	15,252	90.4	1,622	9.6	16,874
2017	16,408	88.6	2,110	11.4	18,518
2018	16,753	85.9	2,755	14.1	19,508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25.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2.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

가.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규모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0년에는 약 358만건으로 일반수입 건수(약 914만건)의 1/3수준에 불과하였지만, 그 이후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일반수입신고 건수를 앞지르고 있다. 2018년 전체 수입 약 5,382만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약 3,226만건으로 전체 수입 건수 중에서 약 5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일반수입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수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만, 전자상거래는 개인들이 소액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금액은 약 27억 6,000만달러로 전체 수입 금액에서 약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수는 일반 수입보다 많지만 금액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I-10〉 일반수입과 전자상거래 반입 비교

(단위: 천건, %, 백만달러)

연도	건수			금액		
	일반수입	전자상거래	비중	일반수입	전자상거래	비중
2010	9,143	3,579	28.1	425,212	274	0.1
2011	10,611	5,602	34.6	524,413	472	0.1
2012	11,842	7,944	40.1	519,584	707	0.1
2013	14,344	11,159	43.8	515,586	1,040	0.2
2014	16,303	15,530	48.8	525,515	1,545	0.3
2015	14,460	15,842	52.3	436,499	1,521	0.3
2016	15,517	17,395	52.9	406,193	1,635	0.4
2017	18,691	23,592	55.8	478,478	2,110	0.4
2018	21,560	32,255	59.9	535,202	2,75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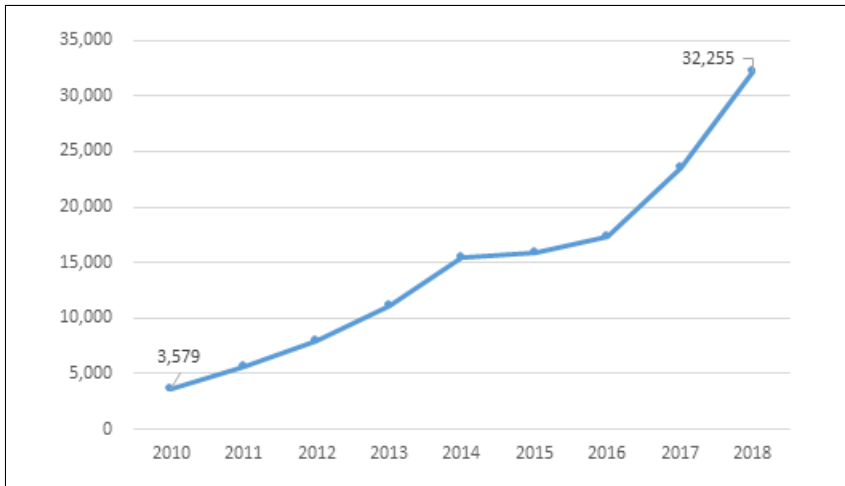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19.;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검색일자: 2019. 9. 19.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건수는 2010년에는 약 360만건에서 2013년에 1천만건을 넘어섰고, 이후 2018년에는 약 3,226만건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만 증가율이 주춤하였지만 줄곧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반입 금액도 2010년에는 약 3억달러에 미치지 못했는데 2013년 10억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약 27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반입 금액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4]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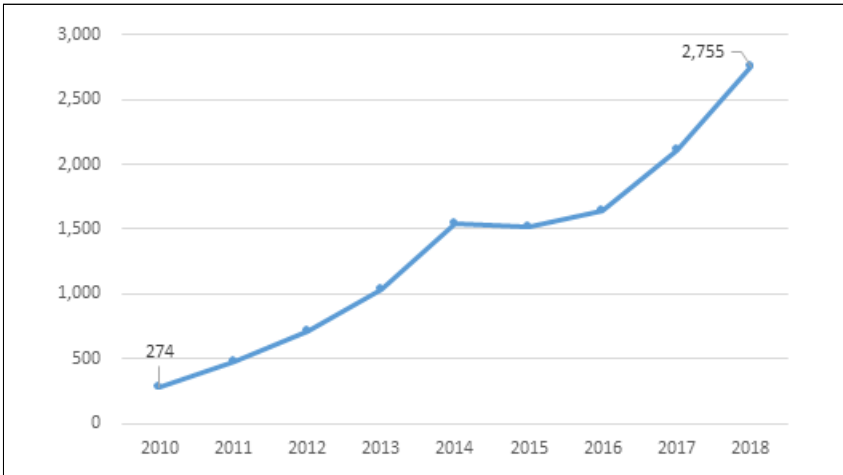
(단위: 천건)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s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4.

[그림 II-5]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4.

〈표 II-11〉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현황

(단위: 천건, %, 백만달러)

연도	건수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2010	3,579	-	274	-
2011	5,602	56.5	472	72.3
2012	7,944	41.8	707	49.8
2013	11,159	40.5	1,040	47.1
2014	15,530	39.2	1,545	48.6
2015	15,841	2.0	1,521	-1.6
2016	17,395	9.8	1,635	7.5
2017	23,592	35.6	2,110	29.1
2018	32,255	36.7	2,755	30.6
평균		29.1		31.5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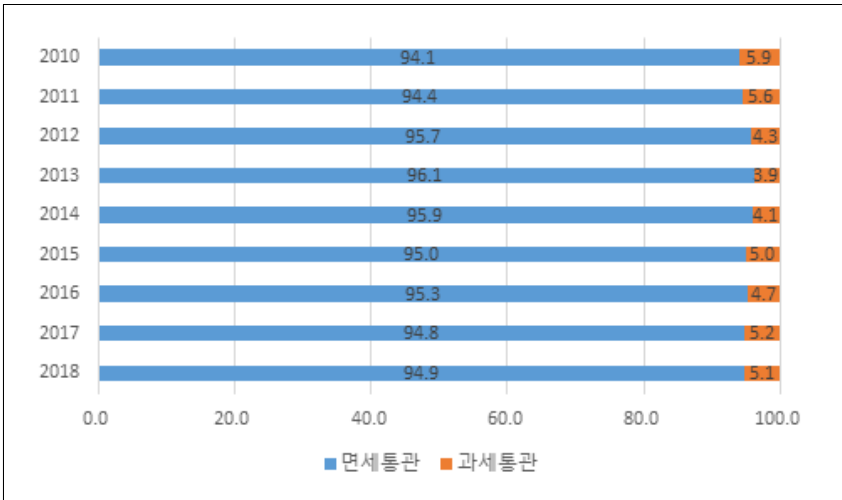
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면세 통관

전자상거래를 통해 통관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면세로 통관되고 있다. 2018년에 면세로 통관되는 전자상거래 건수는 약 3,059만건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건수의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로 통관되는 전자상거래 금액은 약 20억달러로 전체 해외직구 물품 금액의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을 보면, 과세통관 건수는 전체 전자상거래 건수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5~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대부분 면세한도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6]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비중(건수)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st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09&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19. 7. 4.

〈표 II-12〉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현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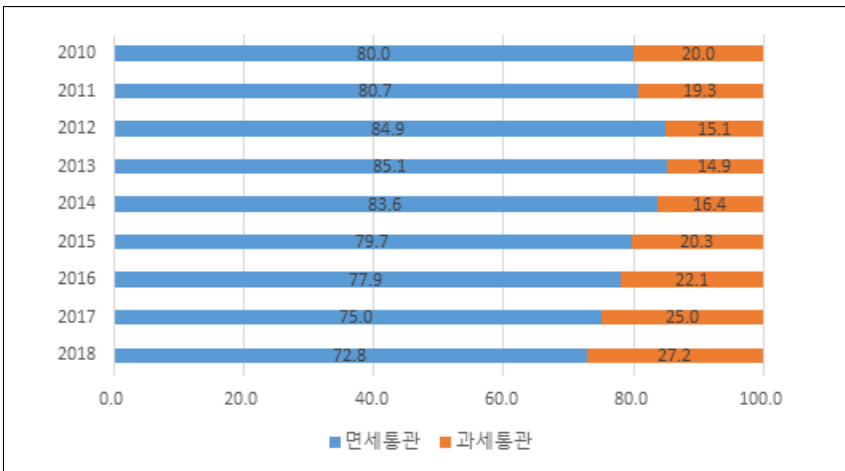
(단위: 천건, %)

연도	건수		비중	
	면세통관	과세통관	면세통관	과세통관
2010	3,369	210	94.1	5.9
2011	5,289	313	94.4	5.6
2012	7,602	342	95.7	4.3
2013	10,725	434	96.1	3.9
2014	14,896	634	95.9	4.1
2015	15,043	798	95.0	5.0
2016	16,583	812	95.3	4.7
2017	22,367	1,225	94.8	5.2
2018	30,589	1,657	94.9	5.1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i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sits_cd=245709&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19. 7. 4.

[그림 II-7]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비중(금액)

(단위: %)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i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sits_cd=245709&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19. 7. 4.

〈표 II-13〉 전자상거래 물품 면세 및 과세 현황(금액)

(단위: 백만달러, %)

연도	금액		비중	
	면세통관	과세통관	면세통관	과세통관
2010	219	55	80.0	20.0
2011	381	91	80.7	19.3
2012	600	107	84.9	15.1
2013	885	155	85.1	14.9
2014	1,292	253	83.6	16.4
2015	1,213	308	79.7	20.3
2016	1,274	361	77.9	22.1
2017	1,582	528	75.0	25.0
2018	2,004	751	72.8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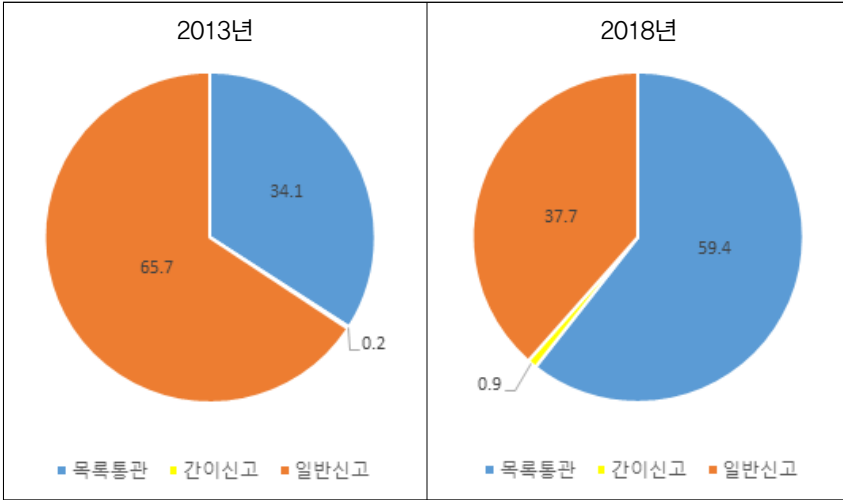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i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2457&sits_cd=245709&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19. 7. 4.

다.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현황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는 2018년에 목록통관 물품이 약 1,916만건 반입되어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중에서 약 59.4% 정도가 목록통관으로 반입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신고를 통해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약 37.7%, 간이신고를 통해 반입되는 건수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목록통관 또는 일반신고를 통해 반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8]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표 II-14>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건수

(단위: 천건, %)

연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13	3,807	34.1	21	0.2	7,327	65.7	11,155
2014	6,588	42.4	31	0.2	8,911	57.4	15,530
2015	9,086	57.3	4	0.0	6,772	42.7	15,862
2016	9,763	56.1	66	0.4	7,566	43.5	17,395
2017	13,217	56.0	159	0.7	10,216	43.3	23,592
2018	19,158	59.4	280	0.9	12,187	37.7	3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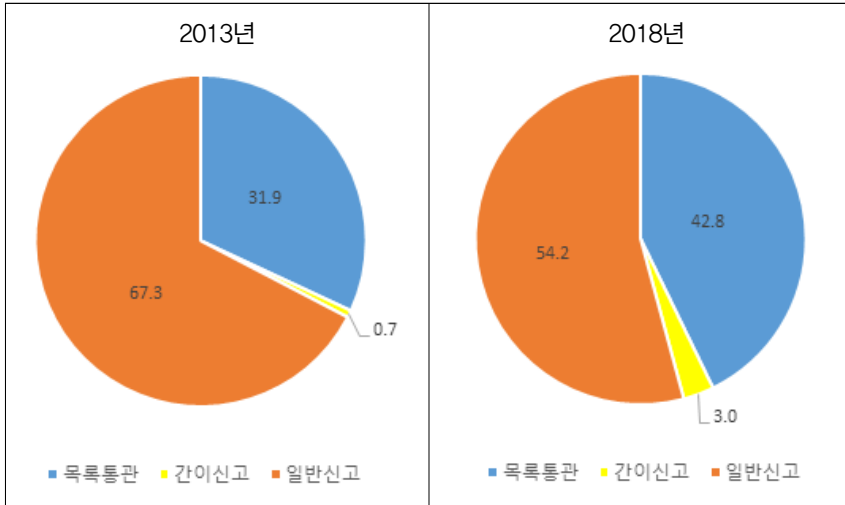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전자상거래 물품의 반입 규모(금액)를 보면, 일반신고로 반입되는 물품의 금액이 2018년에 약 14억 9,000만달러로 절반 이상(54.2%)을 차지하고 있고,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금액이 약 11억 8,000만달러였다. 그러나 일반신고로 반입되는 물품의 금액 비중은 감소하면서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신고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간이신고로 신고된 물품의 금액은 약 8,000만달러로 약 3%로 증가하였다.

[그림 II-9]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표 II-15>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반입 금액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331	31.9	8	0.7	697	67.3	1,036
2014	570	36.9	5	0.3	970	62.8	1,545
2015	717	47.1	1	0.1	805	52.9	1,523
2016	719	44.0	22	1.4	893	54.6	1,635
2017	887	42.0	50	2.4	1,173	55.6	2,110
2018	1,179	42.8	83	3.0	1,493	54.2	2,755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라.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현황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는 품목에는 건강기능식품,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신발류, 완구 및 인형, 핸드백 및 가방, 서적, 시계, 운동용품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많이 반입되는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2009년 이후부터 줄곧 반입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이었다.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의류, 화장품, 기타 식품 등의 건수도 늘 상위권에 있다.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2016년 이후부터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미국에서 반입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단일 국가, 단일 품목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품목이 미국으로부터의 건강기능식품으로 2019년 상반기에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2016년 305만건에서 2017년에는 423만건으로 2018년 557만건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는 이미 373만건이 반입되었다.²⁰⁾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는 전자제품도 2016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는 품목의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는 3%를 차지하였지만, 2017년에는 9%, 2018년에는 12%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반입되는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성비 높은 중국산 전자제품이 빠르게 반입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중국 무선진공청소기 전자상거래 건수는 2016년 약 3천건에서 2018년에는 약 23만건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공기청정기의 전자상거래 건수도 2016년 약 1만 3,000건에서 2018년에는 약 29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²¹⁾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무선이어폰(54만 6,000건)과 공기청정기(18만 2,000건)가 많이 반입된 것으로 발표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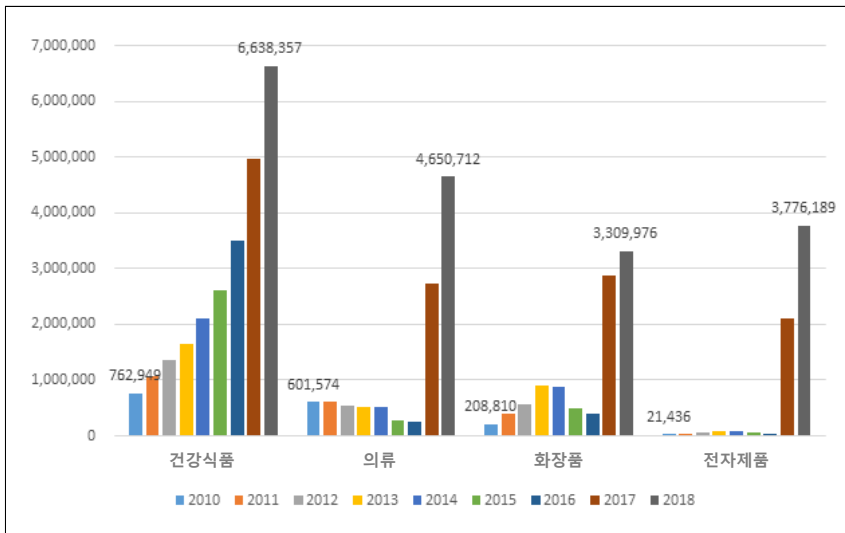
20)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21)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

의류의 반입 건수 및 금액도 2016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의류의 반입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전자상거래 건당 금액을 비교해보면, 2018년에 전자제품은 약 88달러/건이지만 의류는 약 96달러/건이었다. 전자제품보다 의류가 더 고가의 품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전자상거래 건당 금액 약 69달러/건이었다.

[그림 II-10] 전자상거래 주요 4개 품목 반입 건수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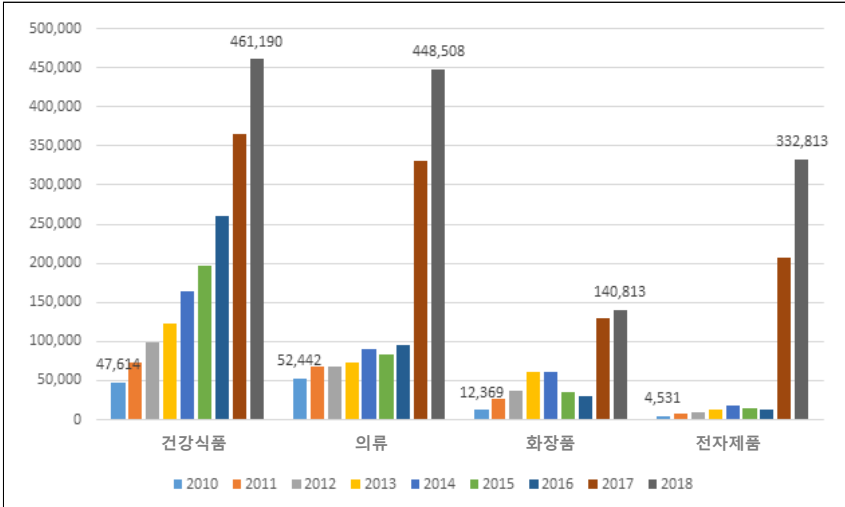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25.

22)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그림 II-11] 전자상거래 주요 4개 품목 반입 금액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25.

<표 II-16>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건수 비중

(단위: %)

순위	2015		2016		2017		2018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금액 비중
1	건강식품	16	건강식품	20	건강식품	21	건강식품	21	17
2	의류	16	화장품	14	화장품	12	의류	14	16
3	기타 식품	14	기타 식품	13	기타 식품	12	전자제품	12	12
4	화장품	11	의류	12	의류	12	기타 식품	10	6
5	신발류	10	신발류	8	전자제품	9	화장품	10	5
6	핸드백	4	전자제품	7	신발류	7	신발류	6	8
7	완구·인형	4	완구·인형	5	완구·인형	5	완구·인형	5	4
8	전자제품	3	핸드백	3	핸드백	3	핸드백	3	7
9	시계	2	시계	1	서적류	1	서적류	1	1
10	서적류	0.4	서적류	1	시계	1	시계	1	1
11	기타 품목	20	기타 품목	16	기타 품목	17	기타 품목	17	24

자료: 1.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에 발표된 수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관세청 보도자료, 「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2016. 1. 19.

마. 전자상거래 국가별 반입 현황

전자상거래 물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중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약 75%의 비중을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다수의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반입되었지만, 2018년에는 전체 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53%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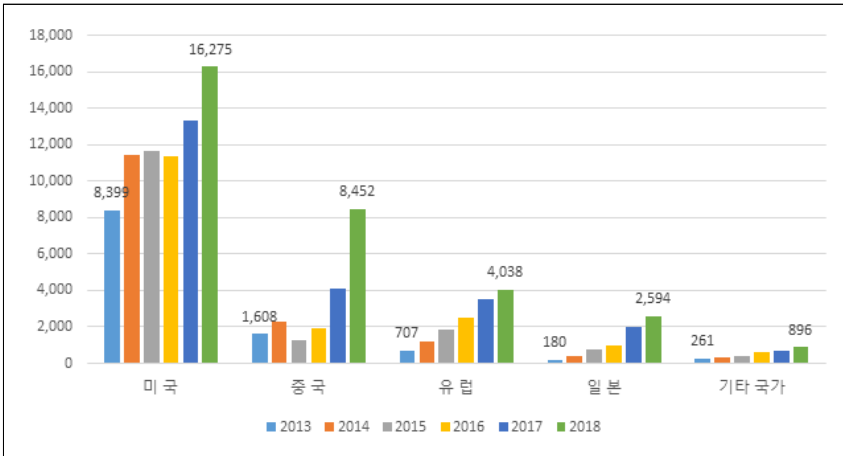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건수 비중이 감소하면서 중국,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의 건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반입 건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비중은 2013년에 건수 기준으로 비중이 14%였는데, 2018년에는 26%로 상승하였다.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건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금액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반입 금액 비중은 2013년에 13%였는데 2018년에는 17%로 상승하였다. 2018년 건수 비중이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물품이 반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전자제품 등의 반입이 증가하여 반입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저가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어 금액 비중은 그만큼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해외직구는 2,123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42%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²³⁾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자제품의 반입이 2018년 상반기 약 343만건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 약 700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달리 유럽으로부터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금액 비중은 중국보다 커서 2018년 건수 비중은 13%이지만 금액 비중은 20%에 이른다. 의류 등의 반입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3) 관세청 보도자료,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그림 II-12]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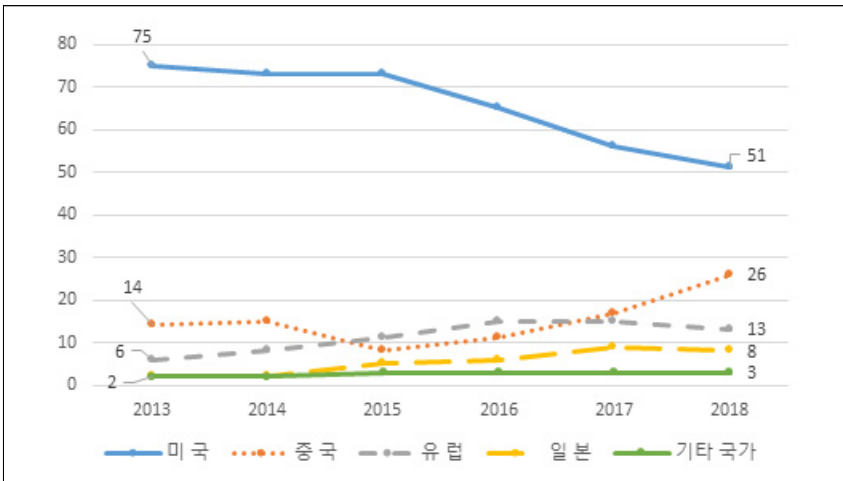
(단위: 천건)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에 발표된 수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3]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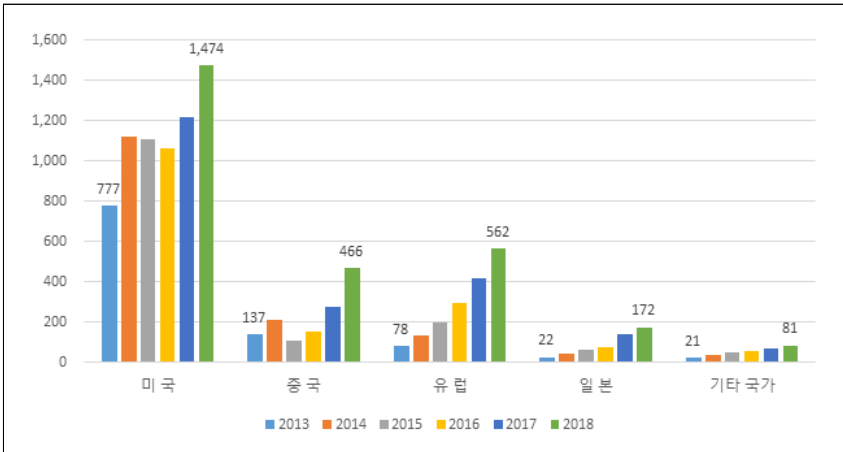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에 발표된 수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4]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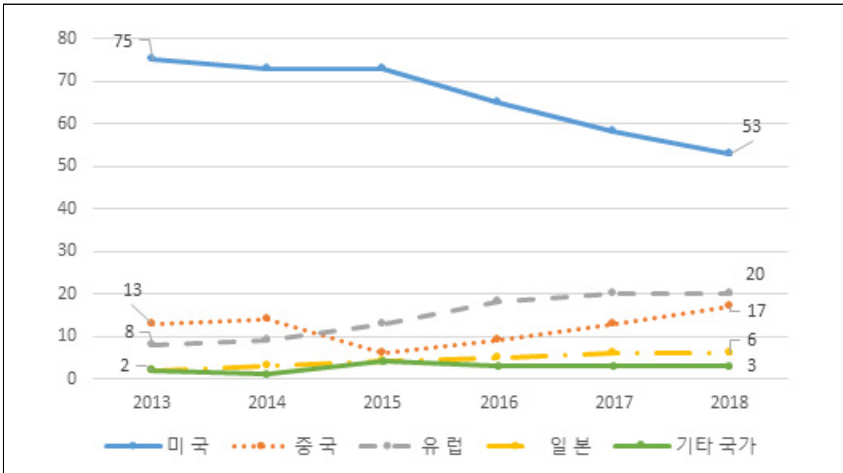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에 발표된 수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5]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금액 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관세청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에 발표된 수치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바. 통상우편을 통한 전자상거래

앞선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는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을 대상으로 통계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에는 국제우편물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국제우편물은 크게 3가지로 국제통상우편, 국제소포우편, 국제특급우편(EM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제통상우편에는 서장(편지)을 비롯해서 2kg 미만으로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소형포장물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통상우편의 소형포장물은 통관우체국에서 X-ray 검사를 거치지만 내용물이 어떤 물품인지 표시되지 않아서 통관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인지 선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또한 국제소포우편은 발송자가 소포 내용, 품명과 가격을 기재하지만, 발송자가 기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명과 가격은 검증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국제소포우편에 비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2kg 미만) 물품은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같은 무게인 경우 국제통상우편이 더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될 때 국제통상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관행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으로부터 전자제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중국산 전자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소포우편이나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입되더라도 통관 현장에서 현장면세된 물품은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편지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더라도 이를 구분해서 통계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편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매년 약 3천건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2018년에 약 4백만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 전체 우편물 건수의 약 7.5%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약 3.3%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수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누락된 결과로 이보다 더 많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은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표 II-17〉 우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단위: 천건, %, 백만달러)

연도	전자상거래				우편물(EDI 수입통관)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금액
2010	2	3.1	2	1.3	64	156
2011	4	6.5	3	1.8	62	164
2012	3	5.0	4	2.5	60	157
2013	4	7.3	4	2.8	55	144
2014	3	5.9	6	4.3	51	139
2015	4	8.0	8	6.2	50	130
2016	3	6.3	4	3.1	48	128
2017	3	6.5	4	3.3	46	123
2018	3	7.5	4	3.3	40	123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9. 25.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3. 소액 개인무역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4년, 2016년과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모아서 결과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라는 이유로 2014년 이후부터 줄곧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약 80% 내외가 응답하였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줄곧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제품의 질이나 종류가 더 좋고 다양해서 해외직구를 이용한다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표 II-18〉 해외직구 이용 이유(복수응답)

(단위: %)

응답내용	2018	2016	2014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78.1	79.5	80.9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62.2	52.1	55.3
제품의 품질이 더 좋아서	15.9	7.5	7.6
제품의 종류가 더 다양해서	14.5	14.3	12.5
해외직구에 대한 호기심 성취감 등으로	5.5	6.3	4.6
기타	1.7	0.2	0.4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p. 23, 〈표 3-1〉; 한국소비자원, 2016, p. 31, 〈표 4-1〉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 기간을 묻는 질문에 2018년 기준으로 2~3년 된 소비자가 약 26.3%로 가장 많았다. 2014년에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소비자가 5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18.6%로 새롭게 해외직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3년 이상인 소비자가 15.1%였지만, 2018년에는 5년 이상 된 소비자가 11.0%로 점점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보다는 기존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9〉 해외직구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2018	2016	2014
1년 이내	18.6	44.0	56.7
1년 이상 ~ 2년 미만	23.5	25.0	24.2
2년 이상 ~ 3년 미만	26.3	15.9	11.0
3년 이상 ~ 5년 미만	20.6	15.1	8.1
5년 이상	11.0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p. 24, 〈표 3-3〉; 한국소비자원, 2016, p. 31, 〈표 4-2〉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지난 1년 동안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평균 횟수는 2018년에는 약 4회 정도로, 지난 2016년의 약 6회와 2014년의 약 11회에 비해 평균 이용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 이용 횟수가 감소함에도 해외직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20〉 해외직구 이용 횟수

(단위: 회)

구분	2018			2016	2014
	해외 구매대행	해외 배송대행	해외 직접구매		
횟수	3.8	4.6	4.3	6.4	11.0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p. 25, 〈표 3-4〉; 한국소비자원, 2016, p. 32, 〈표 4-3〉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해외직구를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 줄곧 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자가소유 목적의 개인 소액 면세한도가 150달러 혹은 200달러이기 때문이다. 약 절반 정도의 해외직구가 면세한도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뜻한다. 50만원 이상의 해외직구가 2018년에는 25.7%로 다른 해에 비해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휴대전화, TV 등의 고가의 전자제품, 고가의 가방 및 의류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1〉 해외직구 1회당 지출비용 금액별 비중

(단위: %)

구분	2018		2016		2014	
10만원 미만	19.2	47.6	18.4	55.0	16.0	52.5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8.4		36.6		36.5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4.3	52.4	18.8	45.0	17.2	47.5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10.7		8.7		10.4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7		2.5		3.0	
50만원 이상	25.7		15.0		16.9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p. 28, 〈그림 3-1〉; 한국소비자원, 2016, p. 35, 〈그림 4-1〉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해외직구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했다. 특히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이 있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22〉 해외직구 이용 시 주요 결제수단

(단위: %)

구분	2018	2016	2014
신용카드	77.7	72.4	69.1
체크카드	11.6	13.8	16.2
결제대행 서비스 (페이팔 등)	5.6	7.2	4.1
현금	5.0	6.5	10.5
기타	0.1	0.1	0.1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p. 29, 〈표 3-10〉; 한국소비자원, 2016, p. 35, 〈표 4-9〉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4. 소액 개인무역 관련 부정 불법 교역

소액 개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혹은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는 마약류 등의 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자가소비용 소액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물품을 면

세한도 이하로 나눠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인데도 자가소비용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면세 받거나 혹은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

가. 마약류의 국내 반입

소액 개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 등으로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는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 적발된 마약류는 60건이고 적발 물량은 6kg이었지만, 2017년에는 83건으로 증가하였고 적발 물량도 15kg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8년에는 더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17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적발 물량도 75kg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우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마약류도 2016년에 240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407건으로 증가하였고 적발 물량도 16kg에서 37k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손전등, 인형, 비누, 이불 등의 안에 마약류 등을 은닉하여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적발된 경우가 있다.

관세청에 의하면, 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 밀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에서 반입되는 대마류의 적발은 2017년에 59건(8kg)에서 2018년에는 244건(33.6kg)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대마류 밀수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2018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온라인 거래나 유학생, 교민 등 지인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발표하였다.²⁴⁾

24)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2019. 1. 24., p. 3

〈표 II-23〉 마약류 반입경로별 단속실적

(단위: 건, kg)

반입경로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여행자	항공	63	26	70	15	58	87
	해상	11	0.9	3	0.04	3	0.6
	소계	74	26.9	73	15.04	61	87.6
수출입 화물	일반화물	4	0.7	1	0.01	10	221
	특송화물	60	6	83	15	176	75
	국제우편	240	16	270	28	407	37
	소계	304	22.7	354	43.01	593	333
기타	선원·불상	4	0.4	2	0.02	6	5
총합계		382	50	429	69	660	426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2019. 1. 24.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이다.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 단속 인프라 측면에서 과학검색장비 확충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관리 측면에서 저위험 물품의 검사를 최소화하고 고위험 물품 선별 및 검사에 세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정된 세관 인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술할 소액 개인무역 관련 신고제도가 개선되면 판매자 및 운송인의 전산 정보를 통해 확인된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 검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나. 소액물품으로 위장한 탈세

현재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액물품을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150달러(미국발 200달러)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과세상의 차별을 악용해서 대량의 물품을 개인들의

소액 면세한도 이내로 나눠서 수입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에 의하면 3만 3,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개별 소비자의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약 4만 1,000건을 중국으로부터 분산해서 국내로 밀수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였다.²⁵⁾ 이 사건은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판매목적의 물품을 마치 자가소비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로 국내로 반입해서 판매하는 불법사례인 것이다. 일반수입물품과 자가소비 소액물품 사이의 과면세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대대적인 부정 사례가 아니더라도 친인척 등의 제3자 명의를 도용해서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나눠서 수입하거나 하나의 수입계약을 여러 일자로 나눠서 반입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소액물품과 일반수입물품 간의 과세 차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선 발송국가와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합산하여 면세한도 범위 초과시 물품 전체 가격에 과세하여,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분할 혹은 반복 수입을 임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외 판매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에 개인 수입물품을 일반수입통관할 때에만 기재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2019년 6월부터는 목록통관 품목까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서 실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명의를 도용해 위장 수입 후 상업적 판매를 하는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²⁶⁾

25)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개인정보 도용, 해외직구 배송대행 악용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2014. 12. 8.

26)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제로 바뀐다」, 2019. 5. 28.

다. 자가소비용 물품의 재판매에 따른 탈세

개인의 자가소비용 소액물품으로 반입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밀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자가소비용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는데,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으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면제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혹은 이를 악용해서 중고나라 등의 온라인 마켓에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무신고 밀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자가소비용 물품과 판매용 물품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정책을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당연히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반품, 환불 등의 어려움과 과도한 반송비용으로 인해 혹은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도 있다. 대규모 기업형 수입 형태에서 적용하던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를 개인들의 소액물품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기업들의 대규모 수입에 대해서는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를 유지하지만 소액 개인무역에 대해서는 고의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해서 이보다는 낮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가소비용 소액물품과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정책 차이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다.

Ⅲ. 소액 개인무역 관련 국제적 논의 및 주요국 통관 및 과세제도

본 장에서는 소액 개인 물품의 통관제도와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주요국의 소액 개인무역과 관련된 통관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국가의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제도와 면세한도도 함께 살펴본다.

1. 국제기구의 소액물품 통관 관련 논의

가. 세계관세기구(WCO) 논의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탁송품 즉시반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에 기반을 두고 국가별 특징에 맞게 소액물품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탁송품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탁송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편지와 서류, 과세되지 않는 저가의 탁송품, 과세되는 저가의 탁송품, 그리고 고가의 탁송품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을 감안해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시는 특송물품에 한정되어 있지만, 세계관세기구(WCO)의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4가지 분류와 거의 유사하게 우편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으로 구분되어 통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일반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언급하고 있지만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언급이 없다. 일반 우편물에 대한 통관 절차는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의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절차, 관세당국과 우편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편물 통관(Clearance of postal items)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⁷⁾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전자상거래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commerce)을 구성해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Cross Border E-Commerce Framework of Standards)을 수립하려고 논의 중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및 구매 유형, 전자상거래 절차 및 반송 절차, 징수 방식, 이해관계자의 역할,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 데이터의 국제표준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 작업에 미국, EU,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이 자국에서 시행하는 혹은 자국에서 제안하는 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원국 간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나. 세계무역기구(WTO) 논의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주제 중 하나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이 2017년부터 발효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동의하면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운영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특송화물업자에게는 적절한 화물처리 시설 설립, 화물도착 전 사전 정보 제출, 세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 특송화물에 대한 통제, 제세 및 수수료 지급 의무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²⁸⁾ 세관은 특송화물의 반출 서류를

27) 관세청,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의 제2장 3, Standard : The clearance of postal items shall be carried out as rapidly as possible.

28) 정재완 외, 2014, pp. 150~151.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세 면세 기준을 정할 것을 권장하나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세관은 특송화물을 검사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표 III-1〉 제7조 제8항 특송화물(Expedited Shipments)

<p>8. Expedited Shipments</p> <p>8.1 Each Member shall adopt or maintain procedures allowing for the expedited release of at least those good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to persons who apply for such treatment, while maintaining customs control,(1) If a Member employs criteria(2) limiting who may apply, the Member may, in published criteria, require that the applicant shall, as conditions for qualifying for the application of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to its expedited ship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rovide adequate infrastructure and payment of customs expenses related to processing of expedited shipments in cases where the applicant fulfils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such processing to be performed at a dedicated facility; (b) submit in advance of the arrival of an expedited shipment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release; (c) be assessed fees limited in amount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in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d)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trol over expedited shipments through the use of internal security, logistics, and tracking technology from pick-up to delivery; (e) provide expedited shipment from pick-up to delivery; (f) assume liability for payment of all customs duties, taxes, fees, and charges to the customs authority for the goods; (g) have a good record of compliance with customs and oth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 comply with other condi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Member'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that specifically relate to providing the treatment described in paragraph 8.2. <p>8.2 Subject to paragraphs 8.1 and 8.3, Members sh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minimize the documentation required for the release of expedited ship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0 and, to the extent possible, provide for release based on a singl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ertain shipments; (b) provide for expedited shipments to be releas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as
--

29) 정재완 외, 2014, pp. 151~152.

rapidly as possible after arrival,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release has been submitted;

- (c) endeavour to apply the treatment in subparagraphs (a) and (b) to shipments of any weight or value recognizing that a Member is permitted to require additional entry procedures, including declaration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payment of duties and taxes, and to limit such treatment based on the type of good, provided the treatment is not limited to low value goods such as documents; and
- (d) provide, to the extent possible, for a de minimis shipment value or dutiable amount for which customs duties and taxes will not be collected, aside from certain prescribed goods. Internal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excise taxes, applied to imports consistently with Article III of the GATT 1994 are not subject to this provision.

8.3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affect the right of a Member to examine, detain, seize, confiscate or refuse entry of goods, or to carry out post-clearance audits,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risk management systems. Further, nothing in paragraphs 8.1 and 8.2 shall prevent a Member from requiring, as a condition for release,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nd the fulfilment of non-automatic licensing requirements.

주: 1. In cases where a Member has an existing procedure that provides the treatment in paragraph 8.2, this provision does not require that Member to introduce separate expedited release procedures.

2. Such application criteria, if any, shall be in addition to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operating with respect to all goods or shipments entered through air cargo facilities.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ta-nov14_e.htm#art7, 검색일자: 2019. 6. 26.

2. 주요국의 소액 개인무역 관련 통관제도

가. 미국³⁰⁾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방법에는 3가지로 우편(international postal service), 택배(courier service), 화물운송(freight carrier) 등이 있다. 구매자는 비용과 통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0) 미국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internet-purchases>, 검색일자: 2019. 6. 1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 우편통관

미국에 도착한 우편물은 세관 산하 국제우체국으로 보내진다. 만일 해당 물품의 가격이 2,000달러 미만이고 수입금지품목 등이 아니면 세관(CBP)에서 통관을 위한 서류를 직접 준비한다. 특히 우편물에 동봉된 물품 가격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관에서 준비하는 서류 없이 통관된다. 다만 세관은 물품 가격이 2,000달러 미만이라도 필요 시에는 일반통관(formal entry)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물품 가격이 2,000달러 이상이면 해당 물품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관 서류 작업 등을 위해 통관 대행업자(customs broker)를 통한 진행을 권장하고 있다.

우편물의 구체적인 통관 절차는 미국 연방규정³¹⁾(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Customs Duties, 이하 19 CFR)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국제우편물에는 동봉된 물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담은 세관신고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물품 가격, 영수증 등 물품의 구매가격 증빙과 송장이 부착되어 있거나 물품 안에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관 신고서 및 물품 송장이 부착,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압류,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송통관

특송업체(courier, express or other commercial service)를 통해 물품을 미국 내로 반입하는 경우 통관을 위한 서류 작업 및 관련 절차를 해당 특송업체가 대행하여 진행한다. 특송업체는 물품 도착 전에 물품의 원산지, 발송인 주소 및 국가, 수취인 이름 및 주소, 물품의 HS코드, 수량, 중량, 금액 등의 정보가 담긴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³²⁾ 미국 세관은 테러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선적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미국 도착 전)에 입수하고 있으며, X-ray, 방사선 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³³⁾

31) 19 CFR § 145.11

32) 19 CFR § 128.21

33) TFAF, "Trade Facilitation Best Practices in Use of Expedited Shipments-United States", 2010.

3) 화물통관

화물운송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국 도착 후 미국 내에서의 배송을 따로 요청해야 하고 통관 대행업자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미국 내 배송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도착 항구 등에 장치된다. 다만 물품 가격이 2,000달러 미만이면 구매자 거주지 인근 항구로의 이송을 세관에 요청한 후 구매자가 직접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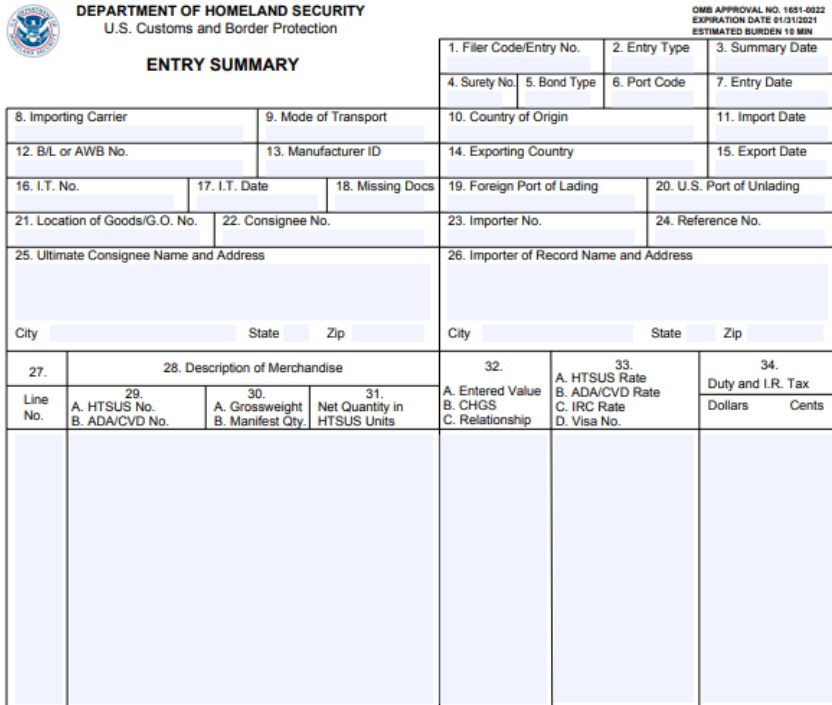
4) 간이통관(informal entry)

미국 세관은 자가사용을 위한 2,000달러 미만의 우편물, 상업 목적의 2,500달러 미만의 우편물 및 화물에 대해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통관을 위한 서류 준비와 품목 분류 및 세율 적용 등을 세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구매자는 일반통관에 비해 수월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2,000달러 이상의 자가사용을 위한 우편물, 2,000달러 미만이지만 세관에 의해 일반통관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00달러 이상의 상업 목적 우편 및 화물은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품목별 HS세번을 적용하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관세청은 통관 대행업자를 통한 통관 진행을 권장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미국 연방규정 (19 CFR) Part 143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 우편물과 특송에 따로 적용되는 규정은 Part 145(우편물통관), Part 128(특송통관)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Part 145(우편물통관)에 따르면, 우편물이 간이통관 대상인 경우 세관 직원이 우편물통관 양식(CBP Form 3419 또는 3419A)을 해당 물품에 부착하고, 간이통관 양식(CBP Form 368 또는 368A) 또는 통관 요약 양식(CBP Form 7501)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련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통관 요약 양식(CBP Form 7501)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요구되는 서류로 간이통관

여부를 묻는 통관유형, 통관부호, 수입일자, 운송수단, 물품별 HS코드, 물품의 수량, 금액, 원산지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³⁴⁾

[그림 III-1] 통관 요약 양식(CBP Form 750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PPROVAL NO. 1651-0222
EXPIRATION DATE 01/31/2021
ESTIMATED BURDEN 10 MIN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32.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Cents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Feb/CBP%20Form%207501.pdf>, 검색일자: 2019. 6. 27.

간이통관 대상 특송품의 통관 절차는 미국 연방규정 Part 128에 규정되어 있다. Part 128에 따르면, 모든 특송품은 미국 도착 전에 통관/배송 양식(CBP Form 3461)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관/배송 양식(CBP Form 3461)은 수입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인의 성명 및 주소, 통관부호, 통관유형(간이통관 여부), 수입

34) 19 CFR § 145.12

일자, 운송수단, 물품별 HS코드, 수량, 금액, 원산지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³⁵⁾

[그림 III-2] 통관/배송 양식(CBP Form 346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8-31-2018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49.3

HEADER INFORMATION			
1. PORT OF ENTRY:	2. BOND TYPE: <input type="checkbox"/> Single Transaction Bond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Bond <input type="checkbox"/> No Bond Required	3. IMPORTER NUMBER: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4. IMPORTER NAME AND ADDRESS:
5. ENTRY NUMBER:	6. BOND VALUE:	7. ENTRY VALUE:	8. CES:
9. ENTRY TYPE:	10. ORIGINATING WHSE ENTRY NUMBER (For Entry Type 22 Only):		11. SURETY CODE:
12. PORT OF UNLADING:	13. MODE OF TRANSPORTATION: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type="checkbox"/> Ocean <input type="checkbox"/> Rail <input type="checkbox"/> Truck <input type="checkbox"/> Hand Carry <input type="checkbox"/> Pipeline <input type="checkbox"/> Other	14. LOCATION OF GOODS (FIRMS):	
15. G.O. NUMBER:	16. CONVEYANCE NAME/FTZ ZONE ID:		
HEADER REFERENCE INFORMATION			
17. REFERENCE ID CODE:		18. REFERENCE ID NUMBER (UP TO 50 CHARACTERS):	
HEADER PARTIES (MUST APPLY TO ENTIRE ENTRY; IF NOT, SKIP TO LINE INFORMATION)			
19. HEADER PARTY TYPE:	20. HEADER PARTY TYPE NAME/ADDRESS	21. HEADER ID #,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20Form%203461%20-%20ACE%20Fillable.pdf>, 검색일자: 2019. 6. 27.

한편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규정한 미국 연방규정(19 CFR) Part 143에는 선적 영수증(bill of lading) 또는 통관 목록(manifest listing)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놓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00달러 이하의 선물(Virgin Islands, Guam, American Samoa

35) 19 CFR § 128.24

로부터 반입되는 선물은 200달러 이하), 800달러 이하의 관세 면세대상 물품의 경우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통관 목록(manifest listing)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영수증 또는 통관 목록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발송인의 이름·주소·국가, 최종 수취인의 이름·주소, 물품의 상세 설명·수량·중량·금액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³⁶⁾

5) 면세한도

미국의 “Trade Policy and Programs”의 Section 321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2016년 200달러에서 상향되었다. 다만 하루에 한 사람이 구입하는 물품으로 한정되며,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와 개수가 다수이더라도 수취인인 한 사람일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면세한도 기준 충족 여부는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하며, 구두 신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 중국³⁷⁾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중국 내로 반입하려면 우편을 이용하거나, 특송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1) 우편통관

우편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취인이 직접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수취인을 대신하여 세관과 우체국이 통관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해관총서는 밝히고 있다.

36) 19 CFR § 143.23

37) 중국 해관총서, <http://english.customs.gov.cn/service/guide?c=64e3bd53-7524-4048-a04e-4902bd dcd86e&k=44>, 검색일자: 2019. 6. 21.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한편 중국은 개인의 국제 교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밀수 등 불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을 통해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다. 우편을 통해 반입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1,000위안(약 17만원)까지이며, 이는 물품 반입 시 매회 적용되는 상한 기준이다. 다만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의 상한액은 800위안(약 14만원)이다.³⁸⁾

2) 우편물 면세한도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 500위안(약 8만 5,000원)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 이는 반입할 때마다 매회 적용된다. 그러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의 면세한도는 400위안(약 6만 8,000원)이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전체 가격이 아닌 초과액에 관세를 부과한다.³⁹⁾

3) 특송통관

중국 세관에 의해 승인 및 등록된 특송업체(Express operator)가 수취인이 요청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특송이라고 한다.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면 2개 이상의 해외 지사 또는 대행사 보유, 세관 신고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중국 국내 기업의 경우 국제화물 운송업에 1년 이상 종사, 해외 기업의 경우 국제화물 운송업에 3년 이상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송업체에 의해 반입된 물품은 3개 범주로 구분되어 통관을 진행한다. Category 1은 면세한도 미만 반입 및 반출 물품, 비과세대상 샘플 및 홍보용 물품, Category 2는 과세대상 반입 물품, Category 3은 그 밖의 기타 물품을 의미하며, 각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상이하다.

38) 중국 해관총서,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7213800b-73c4-4228-8e3a-c6b2359286bb.html>, 검색일자: 2019. 9. 25.

39) 중국 해관총서,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00c0e800-bad4-48cd-b536-44e9e8b5ad93.html>, 검색일자: 2019. 6. 21.

〈표 III-2〉 Category 1 및 Category 2 물품 통관 양식의 주요 내용

Category 1	Category 2
특송업체 이름	특송업체 이름
반입 항구	반입 항구
반입 일자	반입 일자
물품명	물품명
물품 금액	물품 금액
물품 수량	물품 수량
물품 중량	물품 중량
수취인 정보	수취인 정보
-	물품별 HS코드
-	관세율

자료: 중국 Public Information Service, http://www.fdi.gov.cn/1800000121_39_1725_0_7.html, 검색일자: 2019. 6. 21.

4) 특송품(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면세한도⁴⁰⁾

중국 재무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 정책에 대한 고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 한도는 5천위안(약 84만원)이다. 이는 단일 거래 한도이며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2만 6천위안(약 438만원)이다.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무관세(0%)를 적용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납부액의 70%를 부과한다. 즉, 증치세 세율이 13%(2019년 4월 기준 16%에서 13%로 증치세율 인하⁴¹⁾)이기 때문에 이에 70%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9.1%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인 연간 한도에 누적되게 된다.

40) 중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3/t20160324_1922968.html, 검색일자: 2019. 6. 21; 중국 국가 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3359382/201812/c4182338/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9. 25. 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41)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4134>, 검색일자: 2019. 9. 25.

다. 일본

1) 우편통관⁴²⁾

일본 「관세법」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품명, 수량, 가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거쳐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³⁾ 그러나 우편물은 이와 같은 수입허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우편물(서신 제외)은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해당 우편물의 과세가격에 따라 상이하다.⁴⁴⁾ 먼저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이면 해외에서 발송된 모든 우편물(서신 제외)은 세관의 검사 대상이다. 이후 우편물이 면세되는 경우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한다. 만일 우편물이 과세대상이면서 관세를 포함한 총 세액이 1만엔 이하이거나, 세액이 1만~30만엔이면서 수취인이 요청할 경우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Mail)와 청구서(Statement of payment)가 수취인에게 발송된다. 수취인은 현장에서 청구서에 명시된 세액과 수수료(소포 1개당 200엔)를 지불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세액이 3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나 수취인은 국제우편물 통지서를 가지고 청구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며, 세액 관련 수수료 납부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액 및 수수료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이 일본에 도착하는 경우 우체국은 수취인에게 세관 신고를 통지한다. 이후 수취인은 수입신고에 필요한 송장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통관 절차는 우체국 또는 통관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세 등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세관 검사

42) 일본 「관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43) 일본 「관세법」 제67조

44) 일본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kokusaiyubin/6101_e.htm, 검색일자: 2019. 6. 28.

이후 세액이 통보되며, 세금 납부 후 세관의 지불 확인이 있어야 수입 허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발송된다. 다만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우편물의 가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거나, 선물용 등으로 전달되는 경우라면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우편물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표 III-3〉 우편물 통관 절차

과세가격	세금 합계액	통관 절차
20만엔 이하	면세	수취인에게 우편물 직접 배송
	1만엔 이하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함께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배송
	1만엔 ~ 30만엔	우편물 도착을 수취인에게 전화로 통지 후 수취인이 관련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직접 배송 관련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정 우체국에서 물품 방문 수령
	30만엔 초과	지정 우체국 및 은행에서 세금 납부 후 물품 방문 수령
20만엔 초과	-	수취인에게 세관 신고 통지 후 일반수입신고 절차 진행

자료: 일본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exp-imp/privatecargo/private.htm#parcel>, 검색일자: 2019. 6. 28.

이 밖에 특송 통관과 관련하여 일본 세관은 개인이 국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 대리인이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통관 절차를 명시해 놓은 있는 우편물과 달리 특송의 경우 자세한 통관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2) 간이통관⁴⁵⁾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에는 소액화물 수입에 대한 간이통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화물 간이

45)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1~3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통관 절차를 적용받아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간이통관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서에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을 표시하여 신고하면 된다. 간이통관 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항공화물운송장에 수입신고서라고 표시하고 「관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표 Ⅲ-4〉 일본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신고사항

구분	신고 내용
1호	물품명, 수량, 가격
2호	물품의 원산지, 적출지역, 수취인 주소 및 성명
3호	운송 선박 및 항공기 명칭 또는 등록 번호
4호	물품 장치 위치
5호	기타 사항

자료: 일본 「관세법 시행령」,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C00000000150_20180401_429C00000000127&openerCode=1#1056, 검색일자: 2019. 6. 29.

한편 「관세법 기본통달」에는 통관 목록(manifest)만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놓았다.⁴⁶⁾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른 물품으로써 소액화물은 무조건 면세가 적용되고, 소비세 이외의 내국세 과세대상이 아니면서 다른 법령에 의해 증명 또는 확인이 필요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통관 목록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 목록으로 통관을 신청하려면, 수입신고서 대신 “수입(납세)신고서 매니페스트 통관용” 양식을 작성하여 2통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항목에는 신고일자, 담당 세관, 수입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물품의 위치·원산지·수량, 항공기 명칭 또는 등록 번호,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수출업자의 성명·주소 등이 있다.

46)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6, 67-4-7

[그림 III-3] 수입(납세)신고서 - 매니페스트 통관용

輸 入 (納 税) 申 告 書

(マニフェスト通関用)

申告番号
~
計 件

申告年月日 _____

あ て 先 _____ 長殿 船 (取) 卸港 _____

輸 入 者 積載船 (機) 名 _____

住所氏名印 別紙のとおり

電 話 番 号 入 港 年 月 日 _____

代 理 人 原 産 地 _____

住所氏名印 積 出 地 _____

電 話 番 号 船荷証券番号 _____

仕 出 人 蔵 置 場 所 _____

住所氏名 別紙のとおり

品 名 別紙のとおり

※許可印・許可年月日

数 量 別紙のとおり

申 告 価 格 別紙のとおり

関 税 額 0 円 (関税率法第 14 条第 18 号の規定に基づき免税)

(輸入品に対する内国消費税の徴収等に関する

消 費 税 額 0 円 法律第 13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基づき免税)

※受理	※審査	※収納	通関士記名押印

- (注) 1. ※印の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2. 「申告番号」欄には、House Air Waybill 番号ごとに付した申告番号を「〇〇~〇〇」と記載し、その合計件数を「計〇〇件」と併記する。
 3. この申告による課税標準又は納付すべき税額に誤り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ときは、修正申告又は更正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なお、輸入許可後、税関長の調査により、この申告による税額等を更正することがあります。
 4. 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3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て再調査の請求又は財務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료: 일본 세관,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50.pdf, 검색일자: 2019. 6. 29.

3) 면세한도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무조건 면세)에는 면세되는 물품을 나열하고 있으며, 견본품,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의 반입 물품은 면세 적용대상이다.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뿐 아니라 소비세도 면제된다. 단 주세 및 담배세는 면세되지 않는다.⁴⁷⁾

라. EU

1) 통관제도

EU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새로운 수입통제 시스템인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⁴⁸⁾ EU 역외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ICS에 따라 물품 도착 전에 ENS(Entry Summary 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ENS는 운송인(운송수단의 운영자)이 제출의무를 가지며, EU 역외에서 역내로 최초 반입 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⁴⁹⁾ 즉, EU 도착 후 역내 이동 시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 목적지와 상관없이 EU 역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ENS 대상이나, 편지·엽서·인쇄물, 여행자 휴대품, 구두 신고가 허용되는 물품 등은 ENS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품 도착 후에는 전자적인 방법이나 서면으로 세관신고를 해야 한다. 서면신고는 전자적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되는데,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면신고 양식을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라 하며, ENS와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물품 반입 시 제출해야 한다.⁵⁰⁾

SAD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등은 영국 세관에서 소개하고 있다.⁵¹⁾ 영국에서는 SAD 양식을 Form C88로 지칭하고 있으며, 해당 양식에

47)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http://www.kanzei.or.jp/kanzei_law/143AC0000000054.ja.html, 검색일자: 2019. 6. 29.

48) Santander Trade, <https://en.portal.santandertrade.com/international-shipsments/germany/customs-procedures>, 검색일자: 2019. 6. 30.

4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ystem>, 검색일자: 2019. 6. 30.

50) E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general-overview/customs-declaration_en, 검색일자: 2019. 7. 2.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는 물품 설명, 이동 경로, 물품 코드, 관세 처리 코드 등이 있다. 한편 영국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물품 통관 절차(Low Value Bulking Imports concess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물품 통관 절차에 따르면, 개별물품의 가격이 15파운드 미만인 경우(1LV)와 15~135파운드인 경우(2LV) 최대 99개 소액물품을 하나의 수입 신고로 반입이 가능하다.^{52), 53)}

영국에서 국제우편통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⁵⁴⁾ 우편물에 동봉된 물품 금액이 873파운드(혹은 1,000유로)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수입신고(formal customs declaration) 대상이 결정된다. 즉, 물품 금액이 873파운드(혹은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SAD Form C88을 작성하여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발송인은 물품에 대한 설명, 금액, 상업용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를 물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압류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

〈표 III-5〉 영국의 우편물 간이신고서 주요 항목

CN22	CN23
물품 금액이 270파운드 이하	물품 금액이 270파운드 초과
우편물 종류(선물, 상업용 샘플, 서류, 기타) 물품 상세설명, 수량, 금액	우편물 종류(선물, 상업용 샘플, 서류, 기타) 물품 상세설명, 수량, 금액 발송인 정보 수취인 정보

자료: Royalmail, <https://www.royalmail.com/business/sites/default/files/Customs-Declaration-Form-CN22.pdf>, 검색일자: 2019. 7. 2.; Royalmail, <https://www.royalmail.com/sites/default/files/CN23.pdf>, 검색일자: 2019. 7. 2.

51)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declarations-and-the-single-administrative-document>, 검색일자: 2019. 7. 2.

52)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uk-trade-tariff-volume-3-customs-declaration-service-imports>, 검색일자: 2019. 7. 2.

53) HSF Logistic, <https://www.hemisphere-freight.com/lvbi-accreditation/>, 검색일자: 2019. 7. 2.

54)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143-a-guide-for-international-post-users/notice-143-a-guide-for-international-post-users>, 검색일자: 2019. 7. 2.

2) EU 역내에서 반입⁵⁵⁾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이 EU 역내에서 EU 회원국으로부터 발송된 경우 관세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물품이 발송되는 회원국의 세율 혹은 물품을 수령하게 되는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일 해당 물품의 금액이 도착지 국가가 설정한 기준(3만 유로 혹은 10만 유로) 이하라면 물품이 발송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을 수령하게 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맥주, 와인 등의 주류 또는 담배 제품에는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가 물품 발송국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매자가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소비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물품 도착 시 세관에 의해 해당 물품이 압류될 수 있다.

3) EU 역외에서 반입⁵⁶⁾

EU 역외에서 반입되는 온라인 구매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물품 금액, 운송비용,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유로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가격에는 관세액과 운송비도 포함된다. 다만 관세나 운송비를 제외한 물품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22유로⁵⁷⁾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영국은 15파운드⁵⁸⁾(혹은 39파운드)까

55) E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within-eu-union_en, 검색일자: 2019. 7. 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56) E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a-noneu-union-country_en, 검색일자: 2019. 7. 2.

57) WCO, 2017, pp. 25~31.

58)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ods-sent-from-abroad/print>, 검색일자: 2019. 7. 2.

지 면제하고 있다.

EU에서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없애고 모든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⁵⁹⁾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없애지만, 150유로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계속 적용된다.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향수, 주류는 면세 기준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맥주, 와인 등의 주류와 담배 제품에는 EU 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소비세가 부과된다.

3. 소결

주요 국가의 소액 개인무역 통관제도를 살펴본 결과 소액 개인무역에 특화된 통관제도가 있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었다. 국가별로 크게 우편 및 특송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과세가격, 검사대상, 신고내용, 신고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다양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소액 개인무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및 구매 유형, 전자상거래 절차 및 반송 절차, 징수 방식, 이해관계자의 역할,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 데이터의 국제표준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자정보 데이터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논의될 과세방안에서 통관 및 과세행정 비용을 대폭 낮추어 원활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 작업에 자국에서 시행하는 혹은 자국에서 제안하는 제도를 표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소액 개인무역 관련 과세제도 중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미국은 소액물품의 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59) E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new-form-customs-declaration-low-value-consignments_en, 검색일자: 2019. 12. 26.

2016년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과세 및 통관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에서는 새롭게 소액물품 단일 거래 한도(5천위안)와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 6천위안)를 설정했다.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지만 증치세(부가가치세)는 70% 감액된 9.1%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단일 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부과하며 개인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설정해서 과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 면제 혜택을 통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2021년부터 관세 면세한도인 150유로는 유지하지만,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한도를 철폐해서 소액물품이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도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변화이다.

미국이 소액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저자의 추측으로 자국민들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반입은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인 아마존, 이베이 등이 대부분 미국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더 많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국의 면세한도를 높여 다른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할 때 상향된 기준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미국과 달리 일본과 EU는 면세한도를 1만엔과 150유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면세한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연간 한도를 설정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회에 적용되는 것인데 자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세부담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도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를 받는 개인들에게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연간한도 설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IV.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분석 및 제안

해외에서 개인이 수입한 소액물품(150달러, 미국발 200달러)은 현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되었다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국내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을 통한 물품과 일반수입신고를 한 수입물품 및 내국물품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소액 개인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런 자가사용 소액 면세 기준은 1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반복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액 개인무역이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면세되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OECD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 형태를 구분하고 과세방안을 분석한 이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여지가 있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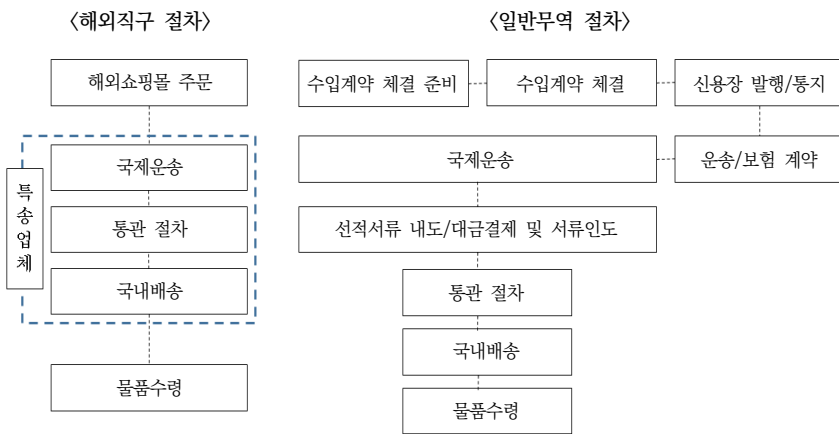
1.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 형태

가. 소액 개인무역 절차

소액 개인무역의 경우, 일반무역을 통한 거래와는 달리 구매, 통관, 배달 등에 있어 매우 간략한 거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수입계약의 체결 후 신용장 발급, 운송 및 보험 계약, 국제운송,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해

야 하는 일반무역을 통한 수입과는 다르게 소액 개인무역을 통한 수입은 구매자가 물품 가격과 물류비, 수수료 등을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소비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반수입신고에서 구비해야 하는 패키징리스트, 납세신고, 가격신고, 원산지증명서 등도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그림 IV-1] 해외직구와 일반무역 절차 비교



자료: 김종덕·김울성, 2019, p. 199 (그림-6)

일반무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 품명, 수량 등 과세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구매자나 화주가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 무역에서 이러한 정보는 판매자로부터 특송업체에 제공되며 특송업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특송업체가 거래에 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무역과 다른 특징이 된다.

최근 들어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하였다.⁶⁰⁾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

60)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2019. 5. 28.

여 목록통관을 허용하는 제도가 자가사용으로 위장 수입되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나. 소액 개인무역의 주요 이해당사자⁶¹⁾

소액 개인무역 거래의 구매에서 물품수령 과정의 이해당사자는 구매자, 판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송업체,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그리고 과세기관(Customs/tax administrations)으로 나눌 수 있다.

1) 구매자

소액 개인무역에서 구매자는 거래의 시작과 끝에 위치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를 시작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운송업체가 배송하는 상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구매자는 거래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모두 지니고 있다. 거래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과 운송업체, 대금 지급 기관 등 물품과 거래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 결정한다. 반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구매자의 경우에는 통관 과정이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나 기타 세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2) 판매자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대금을 지불받는 판매자도 거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물품의 종류나 가격, 배송지역, 운송비용 등 통관 과정에서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를 위한 주요 정보를 지니고 있다.

또한 판매자는 배송 국가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

61) OECD, 2015. pp. 186~193의 소액 개인무역 주요 이해당사자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액 수입의 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국가임에도 품목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해외 수출 거래가 적고 소액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은 부담이 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플랫폼

최근 들어 모바일 마켓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인터넷 스토어를 구축하고 판매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⁶²⁾ 소액 개인무역 거래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지니고 있지 못한 통관절차 및 관세, 관련세금 납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도와준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좌정보를 비롯하여 판매된 물품의 정보, 가격, 대금지급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한다.

4) 운송업체

소액 수입거래에서 운송업체는 국경을 넘어가는 상품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송업체는 운송과정의 기능에 따라 특급운송업체(express carriers)와 우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특송업체와 우편사업자의 차이는 물품 운송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의 정보제공 여부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책임 여부에 있다. 먼저 특송업체는 판매자에게 전달받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입력하여 수출

62)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 유형에 따라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는 'transparent' 방식의 플랫폼과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구매자와 플랫폼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non-transparent' 방식의 플랫폼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transparent' 방식의 플랫폼으로 한정한다.

국과 수입국 세관에 통보하며, 수입국 세관은 해당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반면에 우편사업자의 경우 만국우편연합(UPU)의 규정을 적용받아 CN22 또는 CN23 양식에서 요구하는 발송인, 수취인, 물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 무게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포함되며, 종이 문서의 형식으로 물품에 부착되어 송출된다. 따라서 우편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며,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국 도착 전에 정보가 전달되는 특송업체와는 달리 수입국 세관에 사전 통보가 불가하다.⁶³⁾

또한 특송업체가 통관의 신고인으로 수입 당국에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할 책임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우편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금융중개기관

소액 개인무역에서 금융중개기관은 구매자가 대면한 적이 없는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금융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여, 판매자의 금융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정보, 거래 금액과 같은 일부 정보를 취득하고 보관하지만, 양자 간 거래되는 물품의 정보나 운송수단, 배송지와 같은 관세 및 관련 세금 부과를 위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접근성을 가진다.

6) 과세기관

세관은 업무는 무역원활화와 국경보호 그리고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인 소액무역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면세범위

63) 일부 국가의 우편사업자도 전자적 방식의 정보입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우편물의 전자적 방식을 통한 정보입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종이 문서에 기반을 둔 우편물이 주를 이룬다.

를 초과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세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관은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7) 전자상거래 공급체인 이해당사자의 최소 정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 간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에 이르는 공급체인의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상이한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 품목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있지만 운송관련 정보나 관세 및 관련 세금 부가를 위한 정보는 제한된다.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 공급체인의 이해당사자 중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나 우편사업자와 특송업체는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편사업자는 물품의 실제 가격이나 제품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는 반면에 특송운송업체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이해당사자 중 가장 폭넓은 정보를 지니게 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공급체인에서 관세 및 관련 세금 기관을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최소 정보 습득 여부는 <표 IV-1>에 정리하고 있다.

<표 IV-1> 공급체인 이해당사자별 최소 정보

이해당사자	상품의 성격	가격 정보 (Value)	수입국	수입시기/배송	운송 정보	관세/세금 정보
구매자	○	○	○	○	△	△
판매자	○	○	○	△	○	△
전자상거래 플랫폼	△	○	△	△	△	△
특송업체	○	○	○	○	○	○
우편사업자	△	△	○	○	○	○
금융중개기관	X	○	△	X	X	X

자료: OECD, 2015, p. 193의 Table C.2를 번역·인용

2.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⁶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의 관세 및 과세 적용의 하한선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de minimis threshold)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토협약의 하한선 운영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아 하한선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이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의 확산과 이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시기로 개인 소액 수입물품의 거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고, 개인의 해외직수입이 증가하면서 소액 개인무역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교토협약에 기초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을 정하여 운영하던 국가들은 새로운 통상환경에 직면하여 하한선 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하한선을 폐지하고 소액 개인무역 품목도 과세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 OECD(2015)에서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으로 기존의 전통적 과세안과 구매자 혹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중개당사자를 통한 과세안을 제안하였다. 본 절에서는 OECD 보고서에서 제안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정리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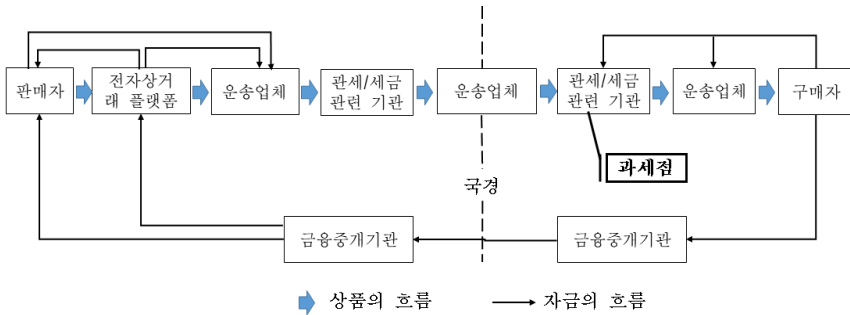
가. 전통적 과세안

[그림 IV-2]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중개기관, 운송업체,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

64) OECD, 2015. pp. 195~208의 소액 개인무역 과세방안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저자 작성

다. 일반무역에서 관세 및 관련 세금의 징수는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 관련 징수기관을 통해 징수되는데 전통적 과세방안은 이러한 일반수입의 과세 방식을 소액 개인무역 물품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⁶⁵⁾

[그림 IV-2] 전통적 과세방안



자료: OECD, 2015, p. 195의 Figure C.2를 번역·인용

전통적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일반수입의 경우, 운송업체 혹은 수입업체는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수입국의 과세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 소액무역의 경우 특송업체에 의해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전자적 입력 방식을 통해 운송되는 물품의 정보와 가격, 수량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통관 이전에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에 종이 서류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되는 우편사업자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세가 수입품별로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과세 결정 및 부과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과세를 위한 준수비용은 과세수입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편사업자에 의한 개인 소액무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과세방안이 소액 개인무역 물품 과세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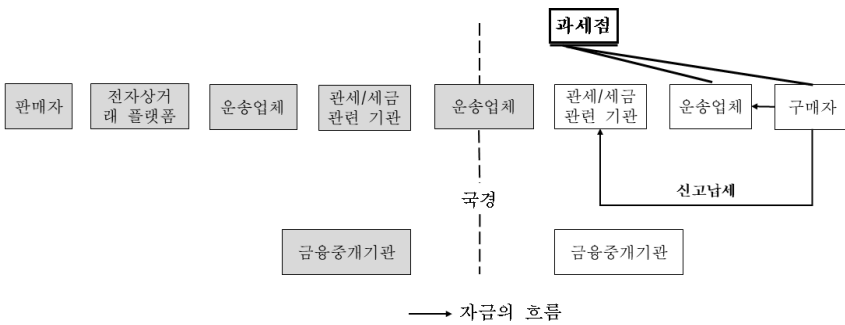
65) OECD, 2015, p.195

나. 구매자에 대한 과세안

구매자 과세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하한선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통관 및 과세를 실시하되 소액 개인무역 물품에는 구매자가 해당 소액물품의 과세 정보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안이다.⁶⁶⁾

구매자는 사전에 물품 구매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과세기관에 제공하거나, 수입품의 통관 과정에서, 혹은 특정 기간에 대한 과세를 사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매자 자신이 수입한 소액물품에 대한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통해 과세를 납부한다. 구매자 과세안은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소액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과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수입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구매자가 관세 및 관련 세금 신고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능력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단점이 된다.

[그림 IV-3] 구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자료: OECD, 2015, p.197의 Figure C.3을 번역·인용

66) OECD, 2015, pp.196~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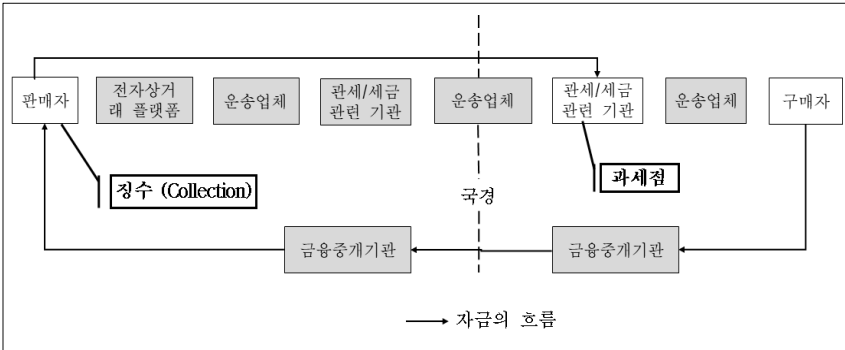
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

판매자에게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판매 시점에 구매자가 상품 구매금액에 해당 물품이 국경을 통과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더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⁶⁷⁾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은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현행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de minimis threshold) 기준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수입국 과세기관이 자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거주 판매자에게 과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에서 판매자에 대한 과세방안은 판매자와 수입국 과세당국이 과세를 위한 준수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협력이 필요한 제도이다.⁶⁸⁾

[그림 IV-4] 판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자료: OECD, 2015, p. 198의 Figure C.4를 번역·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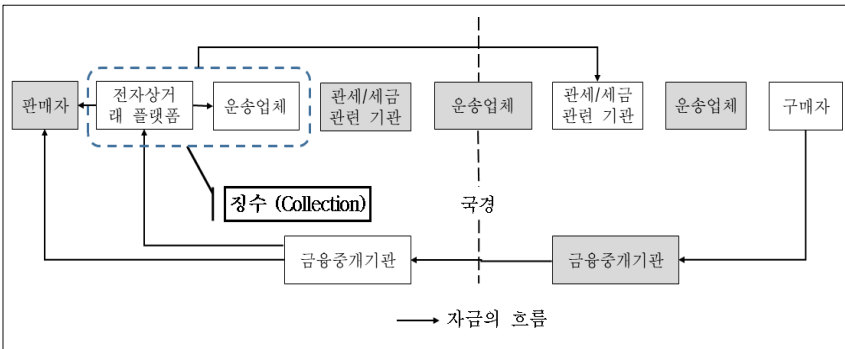
67) OECD, 2015, pp.198~199

68) 판매자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준수비용이, 수입국 과세당국은 인센티브제도 마련이나 해외 판매자 등록제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준수비용이 발생한다.

라.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안

인터넷을 통한 소액 개인거래에서 중개당사자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 운송업체 및 금융중개기관을 들 수 있다. 중개당사자는 판매자나 구매자 비해 중개당사자의 수출입 국가의 언어 사용 능력이나 수입국의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러한 점이 교역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중소기업 수출자나 개인 소액무역 거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과 유사하게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의 중개당사자(자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플랫폼 운영기업이나 운송업체, 금융중개기관 등)에게 징수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중개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그림 IV-5]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방안



자료: OECD, 2015, p. 202의 Figure C.5를 번역·인용

소액 개인무역의 공급체인에서 금융중개기관은 구매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만 거래 물품에 대한 정보나 운송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갖는다. 관세 및 과세 부과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한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금융중개기관은 과세의 책임을 담당하기 적합한 중개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은 국제

운송프로그램을 통해 수입 관세 및 관련 세금의 징수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구매자로부터 상품 금액에 국제운송비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더한 금액을 전달받아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국 세금 관련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체의 성격에 따라 전자적 서류처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송업체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종이 서류에 기반을 둔 우편서비스를 통한 거래에서는 관세 및 관련 세금의 부과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적 우편 신고(Electronic Postal Declaration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우편물 처리는 종이 서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우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

마. 소액 개인무역 과세방안 평가⁶⁹⁾

앞서 기존 전통적 방식의 과세방식에서부터 소비자, 생산자 혹은 중개당사자에 대한 소액 무역 과세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는 1998년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과세구조조건(taxation framework condition)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⁷⁰⁾

- i) 중립성(Neutrality):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상품에 대한 유사한 정도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ii) 능률성(Efficiency): 납세자들의 준수비용과 행정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iii) 확실·단순성(Certainty and Simplicity): 조세는 확실하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납세자가 거래 이전에 언제, 어디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

69) 본 소절은 OECD, 2015, Appendix C.A, pp. 209~216. 내용을 기초로 작성

70) OECD, 1998, p. 4. Box 2.를 참조하여 작성

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iv) 효율성 및 공정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과세는 적시에 적절한 세금을 산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 회피와 회피 가능성은 최소화해야 하며 반작용 조치(Counteracting measure)는 관련된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v) 유연성(Flexibility): 과세 시스템은 기술적·상업적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역동적(Dynamic)이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소액 개인무역 과세안은 각각 상이한 과세 지점과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국경에서 과세가 진행되는 전통적 과세방안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소액 개인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한도액을 설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전통적 과세방식은 전자신고제도 및 평가절차가 운영되는 경우 효과적인 과세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많은 소액 개인무역이 전자적 서류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제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립성과 능률성, 확실·단순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약을 갖는다. 특히 국경에서 통관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송업체와 달리 일반 우편을 이용한 교역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관세 및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매자의 수취거부나 반품 등 거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또한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판매자는 고의적으로 과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며 이는 전통적 과세방안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신고제도와 평가절차 그리고 거래 정보에 대한 원활한 교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소액 개인무역 환경에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표 IV-2〉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전통적 과세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중립성	전자신고제도 및 평가절차가 구비된 경우 높은 중립성 가능	대부분의 소액 개인무역이 전자신고 및 평가절차가 구비되지 않았고, 향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능률성	특송업체와 같이 전자서류 기반이 갖춰진 업체/기업의 경우 높은 능률성	전자적 데이터 전송 환경이 미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확실·단순성	국경에서 관세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체 활용 가능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입은 도착적 상품 정보가 미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의 여지 존재
효율성	전자신고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원활한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질 경우 높은 효율성 가능	전자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발생으로 비효율적임
공정성	-	수입액을 고의로 줄여서 신고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유연성	특송업체의 전자신고시스템은 전통적 과세방식의 유연성을 개선	여전히 문서를 기반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유연성에 한계 존재

자료: OECD, 2015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구매자 과세안은 이론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중립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반면에 과세 준수비용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수입통관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구매자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구매자 과세안은 수입국 전 국민을 잠재적인 부과대상으로 고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구매자 과세안을 준수하는 준수자와 이를 지키지 않는 비준수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구매자 과세안의 심각한 제약이 된다.

〈표 IV-3〉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구매자 과세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중립성	판매자에게 관세 및 과세 의무가 주어지지 않음	수입 건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 또한 여전히 비준수 구매자의 문제 존재
능률성	해외 업체에 대한 준수비용 최소화	동 과세안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 준수 부담이 관련된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전가
확실·단순성	-	준수에 따른 불확실성과 이행을 위한 구매자의 준수비용은 비준수 구매자를 초래하여 세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 개인 구매자는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효율성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공정성	-	자발적 준수자와 비준수자 간의 공정성 훼손
유연성	-	-

자료: OECD, 2015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구매자 과세안의 반대로 판매자에게 과세를 실시하는 판매자 과세안은 구매자 과세안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먼저 구매자 과세안은 과세의 중립성에 있어 외국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에게 동일한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액 개인무역으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을 개선하게 된다. 반면 수입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판매자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소규모 기업에 수입국 세관당국에 수입 관련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되고, 판매자가 소규모 소비 국가에 수출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 과세안을 위해 수입국은 판매자의 준수비용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간소화된 해외 판매자 등록 및 준수 시스템 구축이나 수입국에 등록된 해외 판매자 제품에는 통관 시 신속통관(fast-track) 자격 부여, 동일 제품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해

외 판매자에게 수입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판매자 과세안과 더불어 운영함으로써 과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표 IV-4〉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판매자 과세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중립성	외국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외국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
능률성	수입 관세 및 관련 세금 부담의 일부를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전가	해외 판매자에게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수입국 세무 등록과 같은 과도한 부담 발생
확실·단순성	신속통관(fast-track)제도, 간소화 등록 및 준수제도, 대량 선적 품목 간소화제도 등 보완적 제도를 통해 단순성 확보	간소화 등록 및 준수, 신속통관(fast-track)제도 등은 수입국의 행정비용 유발
효율성	-	해외 판매자의 자발적 준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외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하는 인센티브가 필요
공정성	고의적인 저가신고의 문제를 최소화	수출입 국가 간 긴밀한 협력 없이 판매자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움
유연성	-	판매자의 준수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발전이 필수적

자료: OECD, 2015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운송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금융중개기관을 대상으로 과세를 징수하는 중개당사자 과세안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과세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또한 과세에 따른 준수비용이 구매자/판매자에서 중개당사자로 전환되어 구매자 혹은 판매자의 준수비용과 행정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입국이 운송기관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준수에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개당사자의 경우, 과세 관련 정보는 주로 판매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편운송이나 금융중개기관은 과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금융중개기

관이 수입국에 진출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당사자 과세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판매자 과세안과 유사하게 이들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수를 위한 유인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IV-5〉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중개당사자 과세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중립성	해외 판매자와 국내 판매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	우편운송은 아직 과세를 위한 기반 시설 확보가 미비하며, 금융중개기관은 과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함
능률성	판매자에 대한 행정비용 최소화	우편운송 시스템 개선,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중개기관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
확실·단순성	특송업체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서비스 제공	중개당사자의 거래 관련 정보는 판매자에게 의존하며 제한적인 정보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효율성	수입국 과세기관은 운송업체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고 있어 운송업체에 대한 강제성 가능	수입국 과세당국의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사법권 부재 및 정보 부족
공정성	정확한 거래 정보에 기반할 경우, 고의적인 저가신고 및 과세 회피 감소	우편운송 업체 정보의 판매자 의존성 및 부정확성, 금융중개기관의 정보 부족으로 공정성 훼손 가능
유연성	-	-

자료: OECD, 2015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OECD(2015)가 4개 과세안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전통적 과세안은 과세의 확실·단순성, 효율성, 유연성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과세의 중립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정성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매자 과세안은 모든 평가기준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4개 과세안 중 가장 취약한 방안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구매자에 대한 과세는 구매자의 준수비용을 높여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과세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판매자 과세안은 과세의 확실·단순성에서 4개 과세안 중 가장 우수한 방안으로 꼽혔고, 여타 기준에서도 무난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개당사자 과세안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중개당사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즉, 정보의 전산처리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특송업체가 중개당사자인 경우 4개 과세안 중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과세안으로 평가되지만, 과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금융중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세의 경우는 확실·단순성과 효율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IV-6〉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안 평가

구분	전통적 과세안	구매자 과세안	판매자 과세안	중개당사자 과세안
중립성	하	하	중	중
능률성	하	하	중하	중
확실·단순성	중	하	중상	중상(특송) 해(금융)
효율성	중	하	중하	중상(특송) 해(금융)
공정성	하	하	중	중
유연성	중	하	중	중

자료: OECD, 2015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3. 우리나라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제안

가. 현행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면세 적용

소액 개인무역은 상품의 이동을 특송업체나 우편서비스 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우편물로 거래되는 소액 개인무역의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통관우체국은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현장면세와 현장과세 그리고 심사품목으로 분류한 후 통관우체국에 통보한다. 현장면세 품목은 「관세법」 제94조 소액품목의 면세에 해당하거나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 등이 해당되며, 현장과세 품목은 물품 현장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 중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이 명확하고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과세 우편물품은 세관에서 간이세율⁷¹⁾을 적용하여 부과지하고 통관우체국은 수취인으로부터 세액을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한다. 현장면세나 현장과세 물품이 아닌 우편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며, 심사대상품목의 수취인은 우편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미만이 목록통관 대상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신고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따른다. 면세가 적용되는 목록통관 신고품목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을 위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세관의 검사와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된다.

나. 현행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

소액 개인무역은 구매자가 직접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을 요청하는 직접구매 방식과 국내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구매대행사를 활용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대행 방식, 그리고 해외 판매자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진행하지만 국제운송을 지원하지 않는 판매자의 경우 현지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매가 결정되면 해외 판매자는 운송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며, 특송업체 혹은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우편서비스와 특송업체를 이용한 운송에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상품은 모두 면세대상이다. 이러한 물품은 우편서비스에서는 현장면세로 분류되어 통관되며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에서는

71)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20%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신발, 의류에는 25%, 모피 제품에는 30% 등 품목별로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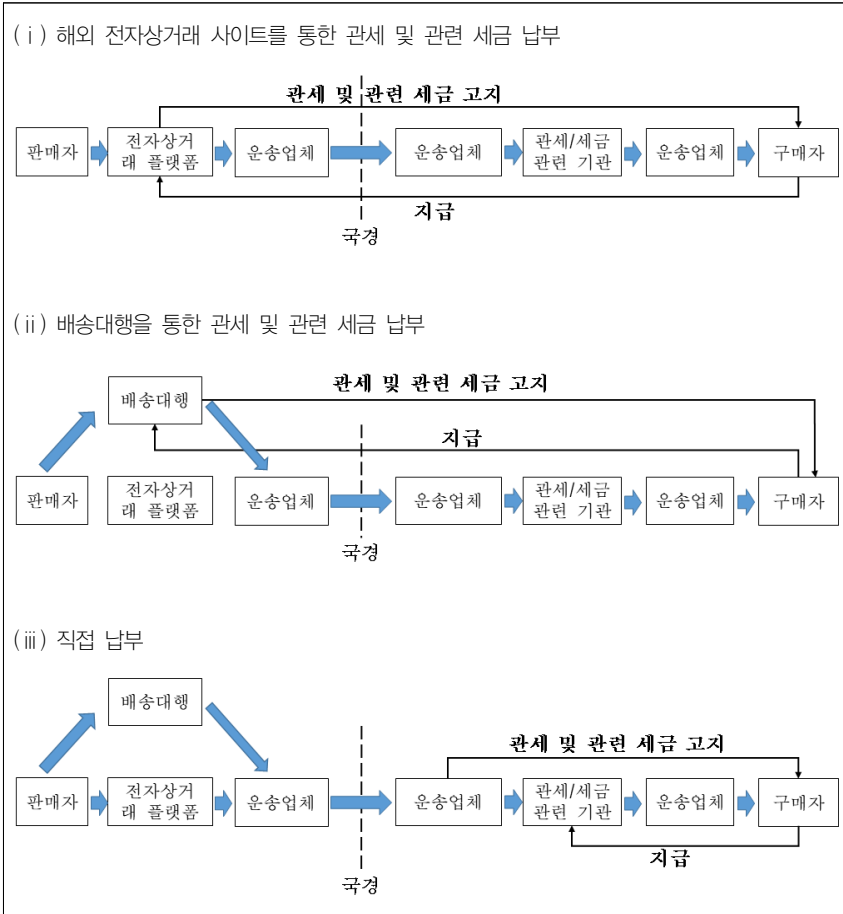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목록통관으로 통관을 완료한다.

현장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아닌 경우,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이 발생하는데, 구매자는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는다. 구매자가 소액 개인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로는 구매 시점에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관련 비용을 구매 금액과 함께 결제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국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세금 비용을 자사 사이트에서 미리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국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아직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식은 배송대행을 통해 관세 및 관련 세금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배송대행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국 내의 배송대행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한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물품을 수령한 후, 국내 통관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는 이를 배송대행 서비스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국내 세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특송업체는 국내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발생하면 수취인(구매자)에게 납부자 번호 및 납기내 금액을 고지하여 구매자는 세관에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납부가 완료된 상품은 다시 특송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림 IV-6] 소액 개인무역의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방식



자료: OECD, 2015를 기초로 저자 작성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납부와 배송대행을 통한 납부 방식은 통관 과정에서 물품이 세관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직접 납부 방식은 정확한 세금 및 관련 세금을 인지하고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특송업체가 아닌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에서 결정한 관세 및 관련 세금 내용을 수취인(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통관 과정에서 배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과세 통지와 납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 신고를 도착 5일 전부터 사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간적인 손실을 보완하고 있으나, 도착 전 신고가 가능한 우편물은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로 제한된다. 또한 세율이 인상 되거나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는 시기와 입항 시기의 물품의 HS 10단위가 변경되거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품목도 도착 전 신고는 제한된다.⁷²⁾

다. 국내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전통적 과세방식과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자적 방식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통관우체국이 세관의 결정통보를 수취인(구매자)에게 통보(부과고지방식)하고,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납부한 후 통관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전자적 방식으로 탁송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송업체 통관의 경우, 전통적 방식을 통한 관세 및 관련 세금의 납부와 플랫폼이나 배송대행 등 중개당사자를 통한 납부 방식

7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신고의 시기

- ① 제15조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제4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할 수 있다.
- ② 도착 전 신고는 신고대상물품이 제5조에 따른 통관지 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의 겹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써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써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이 사용되고 있다.⁷³⁾

OECD가 제안하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 중, 구매자에 대한 과세는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과세 정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의 과소보고 가능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방안은 구매자가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이 일반인 대상으로 크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운영에 제한을 갖는다. 또 다른 방식으로 제안되는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은 판매자가 과세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 기준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해외 판매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행 「관세법」상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거주 판매자에게 과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나 운송업체를 통해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운송업체를 통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먼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소액 개인무역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우리나라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지연이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편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종이 서류에 기초하여 운송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과세비용이 과세수입을 초과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면세가 적용되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소액 개인무역에 대

73) 일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해외운송 물품에 대해 운송비 및 관련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에게 청구하여 통관과 관련 세금 납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과세의 실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과세 형평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동일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불하고 정식 통관되지만 소액 개인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동일 상품의 경우 현행 면세제도는 국내 정식 수입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온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면세제도 철폐는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과세가 실시될 경우 행정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목록통관을 통해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있으며, 국제우편물의 경우 반입되는 물품이 서면으로 정확하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통관 혹은 현장면세 품목에 대해 과세가 실시되면 수입품에 대한 품명, 수량 금액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수입물품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과세에 따른 소비자 효용의 감소는 부정적인 측면이 된다. 과세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소비자 효용은 감소한다. 또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면세가 인하 혹은 철폐됨에 따라 과세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는 과도한 과세비용으로 과세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⁷⁴⁾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효용 감소는 과세 형평성 확립을 통해 국내 수입업체의 효용 증가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는 과세행정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최소화함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아래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하한선이 철폐될 경우 기존에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로 관세 및 관련

74) 현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하한선 적용 품목의 경우, 수입 통관에서 정확한 수입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고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의 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한도 철폐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세금이 면제되었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을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1) 단기 과세방안

가) 중개당사자 과세방안의 유지

단기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중개당사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나 특송업체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구매자를 대행하여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나 특송업체는 거래되는 상품의 과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통관제도, 관세 및 관련 세금 그리고 수입국의 언어 사용능력 등에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개당사자를 통해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나 거래대행 기업을 통한 소액 개인무역은 이미 전자적 방식으로 과세 및 관련 세금 부과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수입에 대한 과세에 추가적인 과세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목록통관으로 면세되고 있는 수입을 간이통관으로 분류하거나 향후 제시할 소액 개인무역 신고제도를 이용해서 수입액/품목에 따른 과세를 실시한다면 다분히 효율적인 과세방안이 된다.

다만 해외에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관 완료 후, 저가신고가 적발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나 구매대행 기업에 납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구매자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포함한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 구매자와 중개당사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납세 의무자 정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⁷⁵⁾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당사자와 구매자 간 계약에 이러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 여부를 명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구매자 과세방안 도입

반면에 현행 전통적 과세방식은 구매자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의 수입에서 전통적 과세방안이 유지될 경우,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과세비용이 과세수입을 초과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소비용인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 수입에서는 구매자가 과세 정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구매자 과세방안이 효율적인 과세방식이 된다.

구매자 과세방안은 특송운송이 아닌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이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우편운송은 통관 과정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면세대상 수입이 폐지되면 이러한 수작업을 통한 과세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과세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구매자의 자발적 신고에 기초한 구매자 과세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과세기관에 사전에 제공하고 통관 과정에서 혹은 특정 기간에 사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소액 개인수입에 대한 과세비용을 낮추고 전통적 과세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관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구매자 과세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를 위한 구매자의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간편

75) 한국의 「관세법」 제19조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관련 세금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에서 납세의 의무가 수취인에게 주어질 경우, 계약의 정확한 이행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국내에 기반을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제한하고 국내 거주 기업에 납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매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구매자의 고의적인 과소보고(저가신고)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제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구매자 과세방안은 과세당국의 과세결정(부과고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과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 정보제공의 의무와 과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국내 정식 수입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구매자 과세방식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된다.⁷⁶⁾

2) 중장기 과세방안

가) 국제우편서비스에 대한 전자데이터교환 시스템 구축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우편서비스를 통한 수입이다. 우편서비스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서류에 기반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 개인수입에 대하여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의 하한선(de minimis threshold)을 운영하는 이유가 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구매자 과세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매자가 과세 정보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구매자 과세방안은 과세기관의 행정비용을 낮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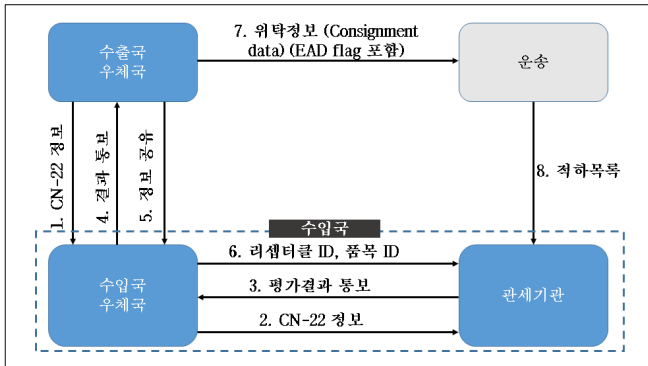
76) 구매자 과세안은 OECD가 제안하고 있는 과세방안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방안이다. 특히 구매자 과세안은 전 국민이 잠정적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비용이 높은 방안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함에 따라 구매자 과세방안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납부 방식이라 여타 방안에 비해 신속하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매자의 저가신고 문제와 구매자의 통관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행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우편서비스에 대한 전자데이터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는 우편서비스를 통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해 사전에 국가 간 전자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EAD(Electronic Advance Dat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AD 시스템은 현재 일반 국제우편물에 수기로 기재되고 있는 CN-22 혹은 CN-23의 정보를 만국우편연합(UPU)이 개발한 ITMATT(ITeM ATTribute)라는 메시지 표준을 통해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편물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만국우편연합(UPU)은 UPU 세관신고시스템(Customs Declara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UPU 세관신고시스템 모델에 따르면 수출국 우체국은 발신/수취인 관련 정보, 품목, 수량, 가격 등의 물품 정보, 보험 및 우편요금 등 기존에 CN-22 혹은 CN-23 서류에 기입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환하여 ITMATT를 통해 수입국 우체국으로 전송한다. 수입국 우체국은 자국의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징수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과세결정 사항을 다시 수출국 우체국에 통보한다. 이를 수취한 수출국 우체국은 다시 리셉터클 아이디(Receptacle ID)와 품목 아이디를 수입국 우체국에 전달하고, 수입국 우체국은 자국 관세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해당 물품이 수입국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국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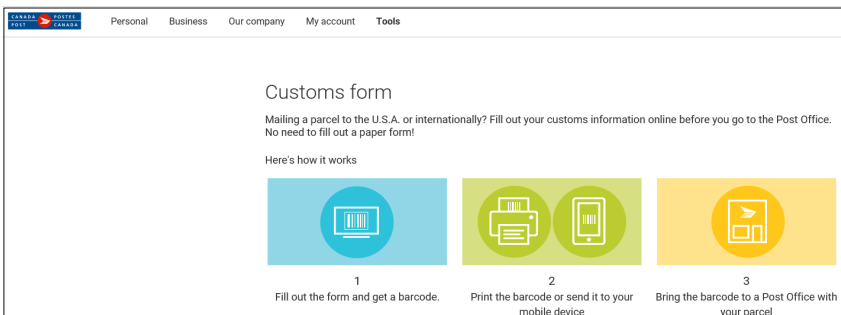
[그림 IV-7] Electronic Advance Data 시스템 흐름도



자료: UPU, 2018, p. 46. 그림을 기초로 저자 작성

ITMATT를 사용한 만국우편연합(UPU)의 EAD 시스템은 우편물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종이에 기반한 우편운송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EAD 시스템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캐나다에서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국제우편물을 발송하기 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발송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정보 입력이 완료된 건에 대해 캐나다 우체국은 해당 물품 발송에 대한 바코드를 제공하고 이를 출력하거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한 후 우체국을 방문하여 물품 송출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고 국제우편을 발송하게 된다.

[그림 IV-8] 캐나다 국제우편 발송 웹사이트



자료: 캐나다 우체국, <https://www.canadapost.ca/cpotools/apps/cdc/?execution=e1s1>, 검색일자: 2019. 10. 6.

나) 전자데이터교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아직까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우편물 정보교환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편물 수입품목의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 품목에 과세 및 관련 세금의 징수는 전통적 과세방안 혹은 위에서 제안한 구매자 과세방안이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국제우편물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액 개인무역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을 낮춤으로써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적으로 관세청 및 관련 기관이 협조하여 국제우편물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완료한 국가와 우선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을 시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우편물 정보교환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과정에서 신속통관(fast-track) 자격 부여나 간소화 등록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우편물 정보교환 참여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 국가의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통관제도 제안

1. 기존 수입신고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가. 전통적 무역과 전자상거래 차이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은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져서 통관이라는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교역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기업에 의한 대규모의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물품의 고객은 해당 수입물품을 판매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서 수입물품의 고객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과 동시에 확정되며 판매와 관련된 위험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무역에서 수입물품의 대금은 통상 물품인도 또는 판매 시점에 지불되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은행 결제가 보편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규모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또는 수입통관 이후 구매자가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은 물품 주문과 함께 물품을 수령하기 이전에 대부분 신용카드로 완납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무역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V-1〉 전통무역과 전자상거래 거래방식 비교

구분	전통 무역	전자상거래 무역
고객 확정시기	수입통관 후 판매 시점 (위탁수입 등은 사전확정)	인터넷쇼핑몰에 주문과 동시 확정 (물품 국내 도착 전)
대금지급시기	통상 물품인도 또는 판매 시점	선납
지급방법	신용장에 의한 은행 결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직접결제
구매계약 형태	개별 매매계약	약관(인터넷쇼핑몰에 게시)
물품주문 형태	수입자 단위 대량주문	소비자 단위 소량주문
수입계약 명의자	수입판매업자 명의	국내소비자 명의
위험부담	수입판매업자가 수입거래 및 판매에 따른 손익의 위험부담	수입판매업자가 수입거래책임부담 (물품파손, 오배송, 지연배달 등)

자료: 최정우, 2006, p. 85. 〈표 24〉

나. 소액 면세물품의 일반신고

이처럼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한 대용량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거래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반수입신고서를 소액 개인무역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앞서 보았듯이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의 약 40% 정도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간이신고제도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0% 정도가 목록통관으로 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이면서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혹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인 경우이다.

특히 소액 면세 대상품목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건수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매년 가장 많이 반입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이다.

건강기능식품 등에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건

강의약품 등은 요건 확인이 면제되어 전문기관의 성분분석이나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수입신고는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신고 양식으로 목록통관의 28개 항목에 비해 69개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와 관련 없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송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러한 일반수입신고서를 기재하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

김종덕·김울성(2019)에서도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일반수입신고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김종덕·김울성(2019)에서는 개인 탁송품은 부과고지대상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수입신고서를 통해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 법적 규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탁송품의 부과고지대상을 150달러 이하로 개정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세관의 부과고지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⁷⁾ 또한 일반수입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사후세액심사 대상이 되어 수입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수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도 서류보관 의무가 있지만 소액물품을 사후에 심사하기 위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⁸⁾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 화물은 특송물품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으로 60% 정도가 수입되고 있지만, 목록통관제도는 원래 소액 개인 무역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고 기업들의 서류 또는 샘플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해 특송제도에 맞춰서 설계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특송을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 건수가 2018년에는 약 3,226만건으로 전체 약 4,211만건 중에서 약 76.6%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목적인 기업들의 서류 등의 운송은 985만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액 개인무역이 급증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통관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서류 또는 샘플 등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마련된 특송제도가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77) 김종덕·김울성, 2019, pp. 200~201.

78) 김종덕·김울성, 2019, pp. 203~204.

2. 소액 개인무역제도 제안

기존 기업의 대용량 위주의 일반무역에 대한 통관제도는 꾸준히 개선되면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액 개인무역을 이 제도 안에서 수용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형적인 무역형태와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새로운 통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관제도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과세제도도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우리나라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할 경우 통관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 개인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경우 우선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 유출되는 문제점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취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취인도 확인 가능해지고, 개인통관고유부호별로 구매 실적이 분석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어려워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면 자가사용 목적인지, 아니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이전에 비해 파악이 용이해질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을 빈번하게 수입하는 경우에 자가사용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의 물품 양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소액 개인 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과세 형평성도 이렇게 빈번하게 소액 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특정 품목 등에 대해 연간 구매한도(횟수, 구매수량, 구매액 등)를 설정할 수도 있다. 현재 건강식품, 의약품 등은 연간 총 6번으로 구매한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해서 빈번하게 소액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현재 단일 거래 한도와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하여 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일 거래 한도는 2천위안이고,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2만위안이다.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하고 증치세와 소비세도 법정 납부액의 70%만 부과한다. 그러나 단일 거래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를 받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중국과 같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과도하다는 기준을 중국에서는 단일 거래 한도 10번 정도로 보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외직구 이용횟수가 2014년에는 평균 11회였지만, 2018년에는 약 4회 정도로 조사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별 빈번 정도를 파악해서 연간 전자상거래 반입 한도를 개인통관고유부호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개별 물품 및 상품 코드 기재

기존의 목록통관은 품명을 하나만 기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물품이 함께 배송될 경우 대표적인 물품명 하나를 기재하고 그 외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는 전체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중국 전자제품 등이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많이 반입되고 있는데, 국제통상우편의 경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입되는 물품이 파악되지 않아 반입 물량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관과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처럼 개별 상품별로 나열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HS코드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소액 개인무역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문 용어인 HS코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소비자에게 HS코드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전문 용어인 품목별 HS코드를 알 필요도 없으며 향후 새로운 소액 개인통관제도가 도입되어도 지금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가 배송을 운송인에게 의뢰할 때 물품별로 HS코드를 부여해서 운송장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HS코드 6 자리까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하도록 해도 과세 및 통관 행정에 큰 무리가 없다.⁷⁹⁾

다. 전자상거래 판매자와 운송자의 정보 활용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전 과정이 전자적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전자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전산에 자동으로 수집되어 분석된다면,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위험관리 및 과세행정을 진행하는 데 과세당국의 관리 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보로 확인된 수입 신고에는 개장 검사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과세 금액도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신 전자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수입신고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부정 불법무역 단속에 과세당국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1)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정보 활용

전자상거래 판매업자의 전자정보를 보면, 우선 물품 주문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주문자의 이름, 주소(운송지), 전화번호 등의 주문자와 배송지에 대한 정보 등이 있다. 또한 판매자는 주문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

79)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6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6자리에 추가한 HS코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HSK코드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9자리, 일본은 8자리의 HS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한 상품에 대한 물품명, 단가, 원산지 등의 정보 등이 있다. 그리고 주문자의 결제 금액 등의 과세 정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금액 정보와 주문자의 물품 리스트, 결제 통화, 총액, 운임, 결제 수단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문일시, 주문번호 등의 주문 관련 관리번호, 판매자의 상호 및 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가 존재한다.

〈표 V-2〉 전자상거래 판매 관련 주문 정보(판매자)

주문	판매자	주문자	상품	가격
주문번호	상호	이름	품명	통화
주문일시	사이트주소	주소	판매자 관리코드	단가
		전화번호	원산지	총액
			수량	운임
			중량	

자료: 저자 작성

2) 전자상거래 물품 운송자의 정보 활용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로부터 물품 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인은 운송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운송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소포번호, 운송번호 등이 있을 것이며 운송 일시(출발일 및 도착일)와 장소(출발국 및 도착국) 등의 정보가 있다. 또한 운송인은 판매자(혹은 거래중개자)로부터 운송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운송할 상품에 대한 물품명, 원산지, 수량, 중량, 물품리스트 등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운송할 물품을 수하할 수하인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수하인의 이름, 주소(운송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판매자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운송방식 및 포장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여기서 수하인 관련 정보와 상품 정보는 전자상거래 판매업자로부터 얻게 된다.

〈표 V-3〉 운송 관련 정보(운송인)

운송	일시	운송자	수하인	상품	요금
소포번호	출발일	상호	이름	품명	통화
운송번호	도착일		주소	원산지	운임
			전화번호	포장 유형	기타 수수료
출발국				포장 수량	
도착국				수량	
				총 중량	
				순중량	

자료: 저자 작성

3)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 신설

판매자와 운송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과세당국에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통관 및 과세 정보를 전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로부터 물품 주문과 운송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적으로 판매자와 운송인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통관자료의 위변조를 막고 빠르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⁸⁰⁾ 참고로 현재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받고 있으며, 세관에서도 수작업으로 취합하고 있어 신속통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해외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소액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및 주문 정보, 그리고 운송자가 가지고 있는 운송관련 배송 정보 등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으로 취합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수출신고서까지 작성되어 세관에 제출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⁸¹⁾ 전자상거래 수출은

80)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해외직구에 접목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검증」, 2018. 12. 26.

우리나라 판매자들과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운송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를 하나의 수출통관 시스템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도 판매자와 운송인의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수출입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추가로 판매자와 운송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정보와 함께 추후에 사후심사 일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격 정보를 이용해서 수입가격을 재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판매자와 거래중개인 등의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상호검증체계가 구축되면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판매자와 운송인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과세당국에서 통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전자정보를 과세당국에서 보유할 수 있다.

〈표 V-4〉 과세당국의 통합 가능한 정보

참조 번호	일시	판매자/운송인/수하인	운송	상품	가격/요금
주문번호	출발일	상호(이름)	운송방식	품명(HS)	통화
소포번호	도착일	주소	선명(번호)	원산지	단가
운송번호	입항일	전화번호		포장 유형	총액
	신고일		출발국	포장 수량	운임
				수량	기타 수수료
				총 중량	
				순중량	

자료: 저자 작성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판매자/운송인/수하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 관련 정보(품명(HS 6자리), 원산지, 수량, 중량 등), 가격관련 정보(통화, 단가, 총액, 운임, 기타 수수료), 운송 관련 정보 및 일시(운송

81) 관세청 보도자료,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한다」, 2019. 4. 11.

방식, 선명, 출발국, 출발일, 도착일, 입항일, 신고일), 이러한 판매 및 운송 관련 참조번호(주문번호, 소포번호, 운송번호) 등을 새로운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지막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목록통관과 달리 새로운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관련 정보(품명(HS 6자리), 원산지, 수량)와 가격 관련 정보(통화, 단가, 총액, 운임, 기타 수수료)는 개별 품목별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수입신고서가 개별 품목별로 HS 6단위로 기재되어야 세관에서 정확한 품명과 통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에서 새로운 신고서를 마련할 때 신고자 편의를 위해 세액까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신고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고 세액까지 계산이 되면 신고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편리하게 단편적인 신고 오류 등을 점검할 수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에 앞서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용 수출신고서를 신설해서 신고 항목을 대폭 조정하여 이런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⁸²⁾

라. 향후 추진 과제

1) 국제적인 전자정보 표준화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 데이터가 이해당사자와 세관당국 간에 원활하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구매한 내역이 전 세계 세관당국에 제공된다고 할 때, 국가별로 데이터 방식이 다르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국제표준으로 제공된다면 그만큼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상호검증체계가 구축되면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도

82) 관세청 보도자료,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한다」, 2019. 4. 11.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으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전자상거래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E-commerce)을 구성해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WCO Cross Border E-Commerce Framework of Standards)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전자상거래 절차 및 반송 절차, 징수 방식 등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 데이터의 국제표준화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정보 데이터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83), 84)}

대규모의 전자상거래 및 특송업체는 모든 판매정보와 운송 정보를 전산 자료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에서 허용한다면 전산화된 정보를 세관 등에 제공하는 데 참여할 능력이 높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전자정보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기반과 관련해서 EU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전산 자료 교환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 개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2016년 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5월부터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 적

8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gdpr>, 검색일자: 2019. 8. 26.

84)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개정판)』, 2018. 9. 4.

용 대상,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표 V-5〉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주요 조항

조항		내용
전문	적용 범위	개인정보의 범위
제2조		물적 범위
제3조		지리적 범위
제4조		개인정보의 정의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44조 내지 제50조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자료: 저자 작성

나) 주요 내용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는 개개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GDPR의 적용 범위(제2조)는 자동화 또는 자동화 수단 이외의 방식(예를 들어 수기처리)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역내 개인정보처리자⁸⁵⁾ 또는 수탁처리자⁸⁶⁾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EU 역외에 설립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EU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GDPR(제3조)이 적용된다.⁸⁷⁾ GDPR(제4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개인정보주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해당인의 신체적, 유전적, 경제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GDPR(제44조 내지 제50조)에는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85) 개인정보처리자란,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86) 수탁처리자란,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구를 의미한다.

87)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gdpr>, 검색일자: 2019. 8. 26.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 가능한 경우는 적정성 결정에 의한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따른 이전, 특정 상황에서의 이전 3가지가 있다. 먼저 적정성 결정에 의한 이전이란,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 가능한 두 번째 경우는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나 수탁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가 제공되는 조건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이 중 감독기구의 승인 없이도 역외 이전이 가능한 보호조치로는 첫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간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둘째, 구속력이 있는 기업규칙(다국적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업 내부 관리 규정), 셋째,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GDPR 제40조(행동강령)에 따라 승인된 행동규약, GDPR 제42조(인증)에 따라 승인된 인증제도 등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GDPR(제5조)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 7가지 기본원칙⁸⁸⁾을 명시하면 행정당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88) GDPR(제5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7가지 기본원칙: 개인정보는 첫째, 개인정보의 주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둘째, 개인정보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하고,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목적 제한성). 셋째,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타당하며,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되어야 한다(데이터의 최소화). 넷째,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정정되도록 모든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정확성). 다섯째, 처리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보유기간 제한). 여섯째,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무결성과 기밀성). 일곱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앞 내용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도 있어야 한다(책임성).

VI. 요약 및 결론

국내외 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해외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손쉽게 여러 다양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마존(amazon.com) 등과 같은 국제적인 쇼핑몰 및 전문 배송업체의 등장으로 개인들이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0년에는 약 360만건으로 일반수입에 비해 약 1/3 수준이었지만, 그후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에 1천만건을 넘어섰고, 2015년을 기점으로 일반수입신고 건수를 앞질렀다. 2018년 전체 수입 5,382만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3,226만건으로 전체 수입 건수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 정도로 미미하다. 일반수입은 기업이 대규모로 수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만, 전자상거래는 개인이 소액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들로 국제우편물에 의한 반입은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현재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다수의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개인의 소액물품 통관이 증가하면서 관세행정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수입통관제도는 대규모 기업형 무역구조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런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수입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주요국의 통관 및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소액 개

인무역에 특화된 통관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통관 및 과세제도 중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EU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띄었다. 미국은 소액물품의 면세한도를 200달러에서 2016년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과세 및 통관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에서는 새롭게 소액물품 단일 거래 한도(5천위안)와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 6천위안)를 설정했다.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지만 증치세(부가가치세)는 70% 감액된 9.1%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단일 거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부과하며 개인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관세와 증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설정해서 과도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세 면제 혜택을 통제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EU는 2021년부터 관세 면세한도인 150유로는 유지하지만,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세한도를 철폐해서 소액물품이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도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책 변화이다. 뉴질랜드에서도 2019년 말부터 일정 규모(연간 6만뉴질랜드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는 역외사업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등록을 의무화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15% GST를 과세하여, 내국물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⁸⁹⁾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방식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법이 있고, 수입신고 방법에는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89) 관세는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만 과세할 경우,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자상거래 거래별로 과세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려고 해도 개별 거래별로의 과세 자료가 필요해서 관세를 함께 부과할 때와 비교해서 과세행정 비용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면 특송업체가 통관 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밖의 나머지 수입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소액 개인무역에서 간이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1% 미만이고 목록통관을 통해 반입되는 건수가 전체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다. 나머지는 약 40% 정도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가별 반입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건수가 가장 많다. 그렇지만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2013년)에서 약 51%(2018년)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이 증가해서 전체의 약 26%(2018년)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품목별 반입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최근 10여년간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다. 의류, 화장품, 기타 식품 등의 건수가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자제품은 가성비 높은 중국산 전자제품이 빠르게 반입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건당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2018년에 전자제품은 약 88달러/건이지만 의류는 약 96달러/건이었다. 전자제품보다 더 고가의 품목인 의류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부분의 소액 개인무역 물품은 면세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을 보면, 과세통관 건수는 전체 전자상거래 건수의 약 5% 내외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95% 정도는 면세되고 있다.

이처럼 소액 개인무역 물품의 대부분이 면세로 반입되는 이유는 통관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면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개정교토협약에 따른 것으로 소액 개인무역의 과세에 대한 행정비용이 과세 수입보다 낮음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하한선 적용이 국내 정식 수입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

거나 철폐하자는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OECD(2015)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방안을 전통적 과세방안과 구매자 혹은 판매자에 대한 과세방안, 그리고 중개당사자를 통한 과세안을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과세방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전통적 과세방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지만 통관 시점에 과세가 진행됨에 따라 통관지연과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구매자 과세방안은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중립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매 수입 건마다 구매자가 신고를 해야 해서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구매자 과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관세 및 통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구매자에게 과세를 실시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판매자에 대한 과세안도 외국 판매자와 국내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해외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개당사자 과세방안 중에, 운송업체에 대한 과세방안은 운송업체가 과세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 수입국의 통관 및 관세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된다. 하지만 특송운송업체가 아닌 종이 서류에 기초한 우편서비스로 거래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에 대한 과세는 통관 과정에서 관세당국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과세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소액 개인무역의 거래 형태와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방식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개당사자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매자 과세방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송업체는 전산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에도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면세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폐할 경우에도 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현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 및 관련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및 관련 세금에 대한 분쟁에서 대한 특송업체와 구매자 간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전통적 과세방식은 구매자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액 개인무역의 수입에서 전통적 과세방안은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해 과세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소액 개인무역 수입에서는 구매자가 과세 정보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 구매자 과세방안이 효율적이다. 특히 전자정보에 기반한 특송운송으로 반입되는 소액 개인무역 물품은 현행 중개당사자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되,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통관과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구매자 과세방안이 가능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구매자 과세방안의 실행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신고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구매자(납세자)의 고의적인 과소보고에 대한 국내 규정 구축과 같은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매자 과세방안은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과세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구매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고 과소보고의 가능성과 관세 및 통관제도에 전문적 지식을 지니지 못한 일반 구매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행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우편서비스에 대한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우편서비스의 전자데이터교환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편서비스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관세 및 관련 세금 징수를 위한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세방안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도

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형 무역구조에 적합하게 수입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소액 개인무역을 기존의 일반무역제도 안에서 수용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수입계약의 체결 후 신용장 발급, 운송 및 보험 계약,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소액 개인무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과 동시에 대부분 신용카드로 완납이 이루어져 소비자로 배송되는 단순한 구조로 일반무역의 신용장 발급 등은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 물품의 약 40% 정도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반입되고 있다. 특히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수입신고로 통관되고 있어, 특송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전자상거래와 관련 없는 항목이 다수 포함된 일반수입신고서를 기재하고 있다.⁹⁰⁾ 이 밖에 신고납부와 부과지의 충돌, 5년간의 서류보관의무 등의 불합리한 제도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의 약 60% 정도가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으로 반입되고 있지만, 목록통관제도는 원래 소액 개인무역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고 기업들의 서류 또는 샘플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약 77%가 전자상거래 물품이고 원래 목적인 기업들의 서류 등의 운송은 약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관제도를 바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과세방안도 적용 가능해질 수 있다.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신설할 때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할 경우 소액 개인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파악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을 빈번하게 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소

90) 목록통관은 28개 항목을 기재하는 반면, 일반수입신고는 69개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액 개인 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이렇게 빈번하게 소액물품을 반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단일 거래 한도와 연간 거래 한도를 설정하여 관세 및 증치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면세를 받고 있는 개인들에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소액 개인무역 신고서에는 정확한 통관과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반수입신고처럼 개별 상품별로 나열하고 HS코드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체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과세되지 않아 과세당국이 행정관리를 실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소비자가 전문 용어인 HS코드를 알 필요가 없으며 향후 제도가 도입되어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별로 HS코드를 부여해서 운송장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판매자와 운송자의 전자정보를 활용해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위험관리 및 과세행정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 전 과정이 전자적 정보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보를 과세당국에서 전산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경우, 전자정보로 확인된 수입신고는 개장 검사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과세 금액도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그 대신 전자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수입신고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부정 불법무역 단속에 과세당국의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주소 등의 주문자 정보, 가격 등의 판매물품 정보)와 운송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운송 관련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세당국에서 전산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 수입신고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신고서를 마련할 때 신고자 편의

및 세관의 신고오류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신고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자정보를 세관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개별 소액 개인무역의 통관처리 행정비용은 기존 일반무역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가진 물품 및 주문 정보와 운송자의 배송 정보 등이 전산으로 취합되고 자동으로 수출신고서가 작성되도록 구축되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과제로는 첫째, 국제적인 전자정보 표준화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정보가 이해당사자와 세관당국 간에 원활하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구매한 내역이 전 세계 세관당국에 제공된다고 할 때, 개별 국가별로 데이터 방식이 다르면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국제표준으로 제공된다면 그만큼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상호검증체계가 구축되어 납세협력 비용 및 과세행정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전자상거래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관절차 국제표준화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거래중개자들의 전자정보를 세관에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기반과 관련하여 EU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 적용 대상, 기본 처리 원칙,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어,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전산 자료 교환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국제무역의 새로운 형태로 소액 개인무역이 등장하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새로운 통관제도 신설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소액 개인무역제도를 기반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공정한 과세도 가능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액물품에 면세를 적용하는데, 이는 WCO의 개정교토

협약에 따라 소액 개인무역의 과세에 대한 행정비용이 과세수입보다 낮음에 따라 과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면세제도가 국내 정식 수입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및 내국물품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세제도의 차별을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방안과 관련해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소액 개인무역 중에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중개당사자 신고납부 방안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우편물은 물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과세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구매자(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세비용 등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액 개인무역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이용자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도 연간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연간 구매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할 경우 과도한 이용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만국우편연합(UPU)의 전자시스템 도입, 특송물품 등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전산정보 표준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통관 및 과세행정 비용을 대폭 낮추면서 원활하게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로 소비자 효용은 감소하지만 과세제도 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감소하고 과세 형평성은 확립되기 때문에 과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개인무역은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전자정보를 활용한다면 특히, 국제우편의 전자시스템과 국제 전산정보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과세행정 비용은 기존 무역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장점을 잘 이용하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공정한 소액 개인무역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병근·송희영,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2009, pp. 69~88.
- 김종덕·김울성,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9, pp. 181~206.
-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pp. 3~17.
- 정재완·양준석·최광호,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한국관세학회, 2014. 7.
- 정재호·김수영·김미영,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연구 12-01,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최장우, 「B2C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1호, 2006, pp. 79~106.
-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및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조사보고서, 2016. 6.
_____, 『해외직구 소비자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 2018. 5.
-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개정판)』, 2018. 9. 4.
- 관세청, 『개정교토협약』, 2004.
_____,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18.
- 관세청 보도자료, 「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2016. 1. 19.
_____, 「특송물류센터 개통 1주년... 화물흐름은 더 빠르게, 국민건강은 더 안전하게」, 2017. 6. 8.
_____, 「2017년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2018. 3. 20.

_____,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신속 통관 위해 인력충원 추진」, 2018. 11. 6.

_____, 「관세청, 해외직구에 접목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검증」, 2018. 12. 26.

_____, 「관세청,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2019. 1. 24.

_____,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도래, 수출입 4천만건 돌파」, 2019. 2. 25.

_____,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구축한다」, 2019. 4. 11.

_____,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2019. 5. 28.

_____,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2019. 9. 17.

_____,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체제 구축」, 2019. 9. 20.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개인정보 도용, 해외직구 배송대행 약용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2014. 12. 8.

McKinsey & Company,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
_____,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5.

TFAF, “Trade Facilitation Best Practices in Use of Expedited Shipments-
United States,” 2010.

WCO,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 2017.

UPU, “WCO-UPU Postal Customs Guide,” 201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rade Policy and Programs/Office of
Trade Section 321,” 2017. 7. 27.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gdpr>, 검색일자: 2019.
8. 26.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78&layoutMenuNo=65, 검색일자:

2019. 6.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 검색일자: 2019. 6. 20.
_____,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003490>, 검색일자: 2019. 7. 5.
_____, <http://www.law.go.kr/lInfoP.do?lsiSeq=206544&efYd=20190501#J241:0>, 검색일자: 2019. 6. 14.
_____,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86%A1%EB%AC%BC%ED%92%88%EC%88%98%EC%9E%85%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검색일자: 2019. 6. 12.
- 미국 연방규정,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 검색일자: 2019. 6. 27
-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ods-sent-from-abroad/print>, 검색일자: 2019. 7. 2.
_____,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143-a-guide-for-international-post-users/notice-143-a-guide-for-international-post-users>, 검색일자: 2019. 7. 2.
_____, <https://www.gov.uk/guidance/declarations-and-the-single-administrative-document>, 검색일자: 2019. 7. 2.
_____, <https://www.gov.uk/guidance/import-control-system>, 검색일자: 2019. 6. 30.
_____, <https://www.gov.uk/guidance/uk-trade-tariff-volume-3-customs-declaration-service-imports>, 검색일자: 2019. 7. 2.
- 일본 「관세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IInfoReadPage.do?CTS_SEQ=42406&AST_SEQ=2601&ETC=1, 검색일자: 2019. 6. 29.
-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https://www.customs.go.jp/kaisei/hourei.htm>, 검색일자: 2019. 6. 29.

일본 「관세법 시행령」,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CO0000000150_20180401_429CO000000127&openerCode=1#1056, 검색일자: 2019. 6. 29.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http://www.kanzei.or.jp/kanzei_law/143AC0000000054.ja.html, 검색일자: 2019. 6. 29.

일본 세관, http://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kokusaiyubin/6101_e.htm, 검색일자: 2019. 6. 28.

_____, <http://www.customs.go.jp/english/exp-imp/privatecargo/private.htm#parcel>, 검색일자: 2019. 6. 28.

_____,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5050.pdf, 검색일자: 2019. 6. 29.

중국 국가 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3359382/201812/c4182338/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9. 25.

중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3/t20160324_1922968.html, 검색일자: 2019. 6. 21.

중국 해관총서, <http://english.customs.gov.cn/service/guide?c=64e3bd53-7524-4048-a04e-4902bddcd86e&k=44>, 검색일자: 2019. 6. 21.

_____,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00c0e800-bad4-48cd-b536-44e9e8b5ad93.html>, 검색일자: 2019. 6. 21.

_____,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7213800b-73c4-4228-8e3a-c6b2359286bb.html>, 검색일자: 2019. 9. 25.

중국 Public Information Service, http://www.fdi.gov.cn/1800000121_39_1725_0_7.html, 검색일자: 2019. 6. 21.

캐나다 우체국, <https://www.canadapost.ca/cpotools/apps/cdc?execution=e1s1>, 검색일자: 2019. 10. 6.

코트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4134>, 검색일자: 2019. 9. 2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

- cd=2457, 검색일자: 2019. 9. 25.
- _____,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7. 4.
- _____,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457&stts_cd=245709&clas_div=&idx_sys_cd=, 검색일자: 2019. 7. 4.
- EC,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general-overview/customs-declaration_en, 검색일자: 2019. 7. 2.
- _____,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a-noneu-union-country_en, 검색일자: 2019. 7. 2.
- _____,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within-eu-union_en, 검색일자: 2019. 7. 2.
- _____,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new-form-customs-declaration-low-value-consignments_en, 검색일자: 2019. 12. 26.
- HSF Logistic, <https://www.hemisphere-freight.com/lvbi-accreditation/>, 검색일자: 2019. 7. 2.
- Royalmail, <https://www.royalmail.com/business/sites/default/files/Customs-Declaration-Form-CN22.pdf>, 검색일자: 2019. 7. 2.
- _____, <https://www.royalmail.com/sites/default/files/CN23.pdf>, 검색일자: 2019. 7. 2.
- Santander Trade, <https://en.portal.santandertrade.com/international-shipments/germany/customs-procedures>, 검색일자: 2019. 6. 30.
-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검색일자: 2019. 9. 19.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20Form%203461%20-%20ACE%20Fiable.pdf>, 검색일자: 2019. 6. 27.

_____,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Feb/CBP%20Form%207501.pdf>, 검색일자: 2019. 6. 27.

_____, <https://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internet-purchases>,
검색일자: 2019. 6. 18.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tfa-nov14_e.htm#art7,
검색일자: 2019. 6. 26.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정재호 · 김한성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개인들이 해외로부터 소액물품 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기존의 대규모 기업형 교역에 기반한 기존의 통관제도와 차별적으로 새롭게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형태의 과세 제도 및 통관제도를 제안하였다.

소액 개인무역에 과세할 경우 단기적으로 증개당사자가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특송업체는 이미 전자적 과세 정보와 신고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현재 수기에 의해 부과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매자(납세자)의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우편서비스의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관의 부과지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로 소비자 효용은 감소하지만 과세 형평성 확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액 개인무역에 적합한 수입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활용을 통해 소액 개인무역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 과세 기반을 갖추어 소액 개인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서 과세 및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적인 전자정보 표준화는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전자정보 교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alysis of Taxation and Clearance System for Low Value Cross-Border E-Commerce in Korea

Jaeho Cheung, HanSung Kim

The rapid increase in e-commerce has been one of prominent featur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unlike traditional trade, e-commerce has greatly increased the trade in low value goods. In this study, we propose taxation system and customs procedure which are suitable for e-commerce based low value personal trade.

In the short run, the current system in which intermediaries act on behalf of importer to pay taxes and duties needs to be maintained. Express carriers already have capabilities of electronic collection and transmission processes. On the other hand, low value imports using postal operators is still reliant on paper based and manual verification process. Therefore, in case of low value import using postal service, it is need to consider applying purchasers' voluntary declaration and payment method. In the mid to long run, as the Electronic Postal Declarations(EPD) is introduced in postal service, the Customs can directly impose and collect taxes and duties for imports using postal service without losing efficiency of tax collection. Imposing taxes and duties on low value import decreases consumer welfare. However, it help strengthen the fairness of taxation and should be design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

This study also suggest an import declaration system for low value import. Personal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can be use to reduce the negative side of low value personal trade. Also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from low value personal trade transaction should be used to reduce compliance and administrative cos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harmoniz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compliance cost and at the same time, how to protect a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 저자약력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현,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19-06

소액 개인무역에 대한 과세 및 통관 정책 연구

발행	2019년 12월 31일
저자	정재호 · 김한성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6,000원
조판 및 인쇄	호정씨앤피
I S B N	978-89-8191-999-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